
2023년 한림성심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4. 1.

한림성심대학교

목 차

I. 자체평가의 체계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	1
----------------------	---

II.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구성	3
2. 추진절차	4
3. 추진경과	4

III. 자체평가 범위, 영역, 항목 등

1. 자체평가 영역	5
2. 자체평가 자료범위	5
3. 기준별 평가요소 및 담당부서 현황	6

IV.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괄	7
2. 지표별 평가결과	10

V. 자체평가 결과활용 계획

1. 평가결과 활용계획	83
2. 평가결과 활용방안	83

I. 자체평가의 체계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자체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2007년 10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 정부의 대학의 질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 1단계로 「대학정보공시」, 2단계 「대학자체평가」를 통해, 2011년 교육부 인정기관에 의한 「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되고, 2014년부터는 기관평가인증의 결과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단계로 진행됨
 -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우리 대학교는 2013년 1주기, 2018년 2주기, 2023년 3주기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선정 되었으며, 기관평가인증 대학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을 유지 또는 충족하고 있는지에 자체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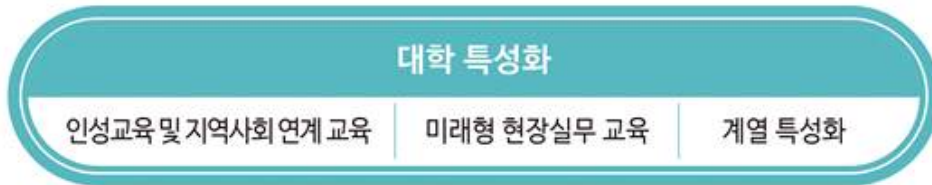
- 교육품질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자기점검
 -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대학의 교육품질(CQI)활동 자가 점검
-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발전계획에 근거한 자체적인 추진실적 점검
 - 성과지표 등의 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점검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을 실현
 - 자체평가 결과공개와 적절한 정보제공
 - 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에 정보공개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해 자기 점검과 평가를 통해, 자율적 교육품질 관리 및 대학발전계획 수립 등 대학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음

□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 비전 달성

○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CQI)을 하기 위한 PDCA(Plan-Do-Check -Act)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학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사명, 비전, 교육목표(인재상)를 실현시키고자 함

VISION 2026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II.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구성

자체평가 조직체계

- 한림성심대학교는 자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성하였음



자체평가 업무 분담

담당부서(조직)	업무내용
자문위원회(교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주요사항 자문
자체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항목 및 기준 설정,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행정부서 팀장/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증빙자료 확인
각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및 보고서 작성
성과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업무총괄(준비계획, 운영, 결과공시 등) •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 비교 분석, 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규정 제7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	위원
김보영	홍성욱, 김희수, 이훈래, 한용수, 이주상, 김형기(외부)

2.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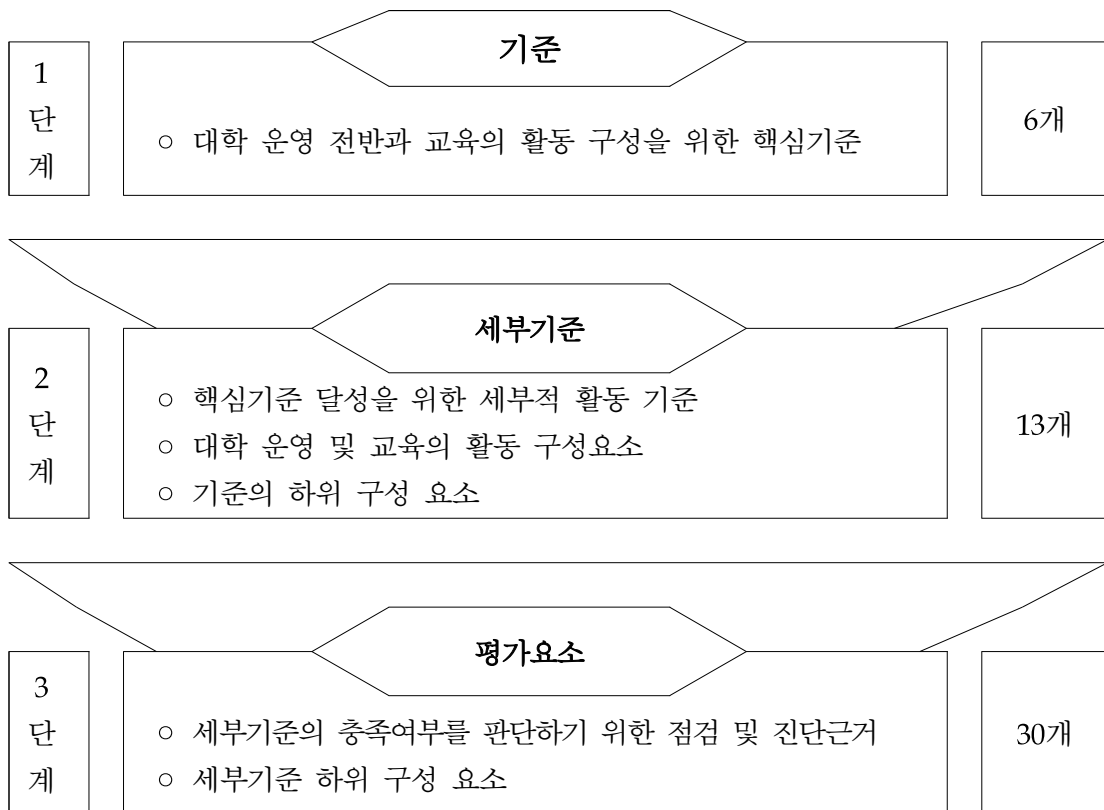
3. 추진경과

추진항목	세부내용	일정	담당
추진체계 기획	대학 자체평가 시행 계획 수립	11.22	성과관리센터
	대학 자체평가 시행 계획 심의	11.27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시행계획 각 부서별 회람	11.29	성과관리센터
자체평가 실시	각 부서별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12.18	각 부서
	각 부서별 자체평가 보고서 기본안 작성	12.27	
	자체평가보고서 수정·보완	1.05	
	자체평가보고서 점검·보완	1.17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자체결과 심의 및 자문	자체평가 결과 최종 심의	1.25	자체평가위원회
	교무위원회 보고(자문)	2.19	성과관리센터
결과 공시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제본 및 공시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 2.28	

Ⅲ. 자체평가 범위, 영역, 항목 등

1. 자체평가 영역

- 기관평가인증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을 유지 또는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함
- 우리대학교는 2022년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실시 대학이며, 이에 대비하고자 『2022년 자체평가 기준을 기관평가인증 기준과 동일하게 구성』 하였음



2. 자체평가 자료 범위

시행연도	평가자료 범위
2023년	2022년 3월 ~ 2023년 2월

3. 기준별 평가요소 및 담당부서 현황

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담당부서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 1.1.1 대학발전계획	정책기획팀 성과관리센터
		□ 1.1.2 교육품질 개선	
	1.2 대학경영	□ 1.2.1 조직과 운영	정책기획팀 재무팀
		▲ 1.2.2 재정 운용	총무팀
		□ 1.2.3 감사	정책기획팀 총무팀
□ 1.2.4 대학의 책무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교무지원팀 정책기획팀 총무팀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전공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 3.1.1 학생선발	입학·홍보팀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교무지원팀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성학습상담센터
		▲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 3.1.4 학업 성취도 평가	
		□ 3.1.5 원격수업	
	3.2 교수학습	□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 4.1.1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지원팀
	4.2 현장실습	▲ 4.1.2 취·창업 지원	취·창업지원팀
		□ 4.2.1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4.3 평생교육체제	□ 4.3.1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팀
5. 학생	5.1 학생복지	▲ 5.1.1 학생복지	학생지원팀
		□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인성학습상담센터
		□ 5.1.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5.2 교육시설	▲ 5.2.1 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시설관리팀
□ 5.2.3 정보보안 지원	총무팀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 6.1.1 인사관리	교무지원팀
		□ 6.1.2 역량 개발	총무팀
		▲ 6.1.3 연구	교무지원팀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6.2.1 처우 및 복지	재무팀 총무팀
평가요소	□ 정성적 평가요소: 19개 ▲ 정량적 평가요소: 11개		

IV.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괄

기준 6개	세부기준 13개	평가요소 30개	판단사항	정량 ▲		정성 □	비고		
				총족 기준	지 표 값	총족 여부		총족 여부	
					2022년				
1. 대학 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 1.1.1 대학발전계획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명과 교육 목표의 수립과 공표,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반영				Y		
		□ 1.1.2 교육품질 개선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및 교육 만족도 조사 체계, 시행 및 환류				Y		
	1.2 대학경영	□ 1.2.1 조직과 운영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문서관리, 의사결정 체계 및 준수					Y	
		▲ 1.2.2 재정 운용	교육비 환원을 대학발전계획과 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 집행, 변경, 결산 업무의 실행과 교육비 환원을, 대학의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	100% 이상	153.2%	Y		Y	
		□ 1.2.3 감사	감사 운영체제 및 준수					Y	
		□ 1.2.4 대학의 책무	대학의 윤리적 책무 준수 및 지역사회 봉사 계획 및 시행					Y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대학의 교육목표와 현장 요구에 따른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 체계, 절차				Y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학년도별 전공강좌당 학생 수 `전공교육의 운영에 따른 편성, 실험실습 지원, 강좌당 학생수의 적정성과 평가 환 류를 통한 개선 노력	평균 157천원 이상 평균 33명 이하	237천원 28.6명	Y Y		Y	
		□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직업기초능력 및 인성 교양교육의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Y	
		3.1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 3.1.1 학생선발	신입생 총원을 입학전형기준에 따른 공정한 학생 선발 준수 및 신입생 총원을 충족, 신입생 선발	77.3% (비수도권 평균 85.9의 90%이상)	88.3%	Y		Y

기준 6개	세부기준 13개	평가요소 30개	판단사항	정량 ▲			정성 □	비고	
				총족 기준	지 표 값	총족 여부			총족 여부
					2022년				
			활동의 평가와 개선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학사운영에 필요한 학사관리 규정, 강의 시수의 적절성, 수강지도 체계				Y		
		▲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재학생 등록유지율 적정 수준의 재학생 유지 충족	80% 이상	97.64%	Y		Y	
		□ 3.1.4 학업 성취도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체제 및 성취수준에 대한 관리 및 노력					Y	
		□ 3.1.5 원격수업	원격수업 지원 체제 및 수업의 관리					Y	
	3.2 교수학습	□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교수학습 운영 체제 및 학생과 교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 개선					Y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 4.1.1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 운영 체제 및 운영 계획,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Y	
		▲ 4.1.2 취·창업 지원	졸업생 취업률 취·창업활동 운영 체제 및 운영 계획,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평균 60% 이상	71.5%	Y		Y	
	4.2 현장실습	□ 4.2.1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운영 체제 및 운영 계획,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Y	
	4.3 평생교육체제	□ 4.3.1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운영 체제 및 운영 계획,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					Y	
5. 학생	5.1 학생복지	▲ 5.1.1 학생복지	장학금 지급 비율 학생복지 지원체제(보건실 포함) 및 계획 및 운영, 장학금 지급 충족	10% 이상	16.12%	Y		Y	
		□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운영, 평가 및 개선					Y	
		□ 5.1.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체계 와 운영, 평가 및 개선					Y	
		□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의 지원 제도 수립 및 운영					Y	
	5.2 교육시설	▲ 5.2.1 도서관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 체제 및 계획, 운영, 평가 및 개선,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충족	21.6천원 이상	40.9천원	Y		Y	

기준 6개	세부기준 13개	평가요소 30개	판단사항	정량 ▲		정성 □	비고	
				총족 기준	지 표 값	총족 여부		총족 여부
					2022년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 확보율 학생, 교직원의 학습·연구·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 및 관리체제 준수	100% 이상	145.4%	Y		
		□ 5.2.3 정보보안 지원	개인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				Y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 6.1.1 인사관리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및 직원의 인사관리와 평가 체제 및 전임교원확보 기준 충족	50% 이상	61.36%	Y		
		□ 6.1.2 역량 개발	전임교원과 직원의 역량개발 체제 및 운영, 평가				Y	
		▲ 6.1.3 연구	전임교원1인당 연구실적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체제 및 성과 평가	0.2건 이상	0.207건	Y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6.2.1 처우 및 복지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평균 30% 이상	45.6%	Y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11% 이상	19.1%	Y	
			교·직원 처우 및 복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 및 인건비 기준 충족					Y
기준 6개	세부기준 13개	평가요소 30개	▲ 정량적 평가요소 11개 □ 정성적 평가요소 19개			모두 총족	모두 총족	

2. 지표별 평가결과

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세부기준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발전계획

○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인의 설립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림성심대학교헌장에서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의 바탕 위에 창의적 지성을 지닌 전문적, 실천적 인재 양성’ 이라는 건학이념을 명시함
- 대학요람 및 한림성심대학교헌장에서 ‘평생 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고 전문성, 다양성, 단기성, 현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맞춤형 전문직업인 양성’ 이라는 설립목적 명시함
- 대학의 사명은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과 창의적 지성을 지닌 전문직업인 양성’ 으로, 이를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대학요람에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 교육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으로, 이를 학칙 제2조(교육목표)에 명시함
- 대학의 사명 및 비전, 교육목표를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사명 및 비전)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건학이념과 교육정신을 비롯하여, 사명, 비전, 교육목표 및 대학의 핵심역량과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교·직원이 상시 휴대하는 업무 다이어리에 수록하여 상시 유념하도록 함

○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과 창의적 지성을 지닌 전문직업인 양성’ 이라는 대학의 사명은 대학의 건학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칙 제2조(교육목표)에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이라는 교육목표로 구체화함
- 대학은 대학사명과 교육목표를 연계하여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바른 품성을 갖춘 따뜻한 사람, 전문 기술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 융복합적 사고를 겸비한 융합적인 사람’ 이라는 인재상을 설정하였고, 4대 핵심역량인 ‘공동체의식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지식융복합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을 설정함

○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대학의 사명이 포함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았으며, 본 대학 법인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음
- 학칙 제2조(교육목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는 당시, 2006학년도에 학칙으로 규정하였고, 2012학년도에 재학생, 교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22-2026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 시 대학의 사명 및 비전, 교육목표, 핵심전략, 추진과제 등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함

○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 대학 안팎의 다양한 요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에 대학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개편 연구를 위한 TFT팀을 5명으로 구성하여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개편함
- 대학 발전계획 개편 TF에서는 대학 사명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하여 학생을 성공시키는 명문 직업교육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바른 품성을 갖춘 따뜻한 사람, 전문 기술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 융·복합적 사고를 겸비한 융합적인 사람’이라는 대학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인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실무중심 교육,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를 수립함
- 사명과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혁신, 산학협력 혁신, 학생지원 혁신, 지역연계 혁신, 대학경영 혁신’이라는 5대 핵심 전략과 그에 따른 19개의 추진과제, 52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함
- 대학의 중장기 재정 수입과 지출 예측하여 과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재정운영의 전략적 배분 계획 수립
- 대학발전 추진체제의 추진결과에 대한 관리와 환류를 위하여 PDCA 절차 기반의 대학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 교육목표,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 외부환경(정책·경제·사회·기술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과 내부환경(최근 3년간의 성과지표 현황, 대학발전 주요성과,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산업체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함
- 교·직원, 학생 및 동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철학 및 교육 발전방향,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 구성원의 의견수렴,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완성한 「2022-2026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자결재 시스템(포털) 게시판,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였으며, 대학정보공시에 공시하였음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매년 각 부서별 전년도 이행사항, 환류실적, 추진계획, 예산 등을 포함한 부서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대학 재정운영 종합 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 대학발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체제는 대학발전위원회규정 제3조(기능) 및 제8조(성과평가)에 근거하여 발전계획의 핵심성과지표 달성도와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점검 및 개선, 환류하는 체제로 이루어짐
- 대학발전계획의 평가는 대학발전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지원하고 대학발전위원회 정책연구 TFT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발전계획의 연차별 핵심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를 비롯하여 발전계획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연차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 대학은 핵심성과지표 및 주요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지표점검 및 달성도 측정, 각 지표별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공시 지표별 전국순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육통계시스템(BI)을 운영함
- 대학발전계획 평가 및 환류 체계
 - * 계획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목표 수립(대학발전위원회)
 - * 계획실행 : 실행과제에 대한 단위부서별 연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 및 실행(단위부서)
 - * 실적점검 : 부서별 월별 업무계획 및 실적 점검 및 보고(미래전략기획실)
 - * 연차평가 : 연차별 핵심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및 종합평가(대학발전위원회)
 - * 개선환류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대학발전위원회, 단위부서)

○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 대학발전계획 자체평가는 대학발전TFT에서 매년마다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 평가, 학과별 주요지표 분석, 재정투자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
- 대학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포털시스템 탑재를 통해 공유하여, 해당부서는 대학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전년도 실적을 자체평가하며 개선실적 등을 도출/환류하고 차기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함 . 매월 부서는 부서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월 실적과 차기월의 계획에 대한 월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 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 주요 개선 실적
 - * 중장기발전계획 핵심성과지표(KPI) 목표값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 * 학과별 주요지표 분석에 따른 하위학과에 대한 학과구조조정을 시행함
- * 2021년 자체평가 결과 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중장기발전계획 개편 필요에 따라, 대학발전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2026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

1.1.2 교육품질 개선

○ 관련 규정 및 준수

- 대학은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규정 제1조(목적) 및 제6조(평가시기)에 의거하여, 평가는 매년 실시함. 자체평가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17조(평가결과공개)에 의거하여 대학홈페이지(대학소개-조직및현황-자체평가) 및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제18조(평가결과활용)에 의거하여 대학의 발전계획과 전략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등에 활용함
- 자체평가규정 외에 학과평가규정 제1조(목적) 및 제4조(평가주기 및 기간)에 의거하여, 대학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학과중심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학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조(시기) 및 제4조(평가영역)에 의거하여 매년 ‘교원·연구, 입시·충원율, 학생지도, 산학, 기여도’ 영역에 대하여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교육품질을 개선함
-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규정 제3조(기능) 및 제8조(성과평가)에 의거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매년 대학 운영 전반의 내용을 담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환류함

○ 자체평가 추진조직

- 사무분장규정 제4조(성과관리센터)에 의거하여 교육품질의 평가·개선을 위해 총장 직속기구인 미래전략기획실 내에 성과관리센터를 자체평가 총괄 부서로 두고 있으며, 각 행정부서, 산학협력단, 사업단 및 학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체평가를 운영함
-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성과관리센터는 성과관리센터운영규정 제2조(업무)에 의거하여, 대학 성과평가, 환류체계 점검 및 질 관리, 성과데이터 분석, 대학자체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은 성과관리센터장, 팀장 및 직원 2인으로 구성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함
- 대학은 자체평가규정 제7조(자체평가위원회)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와 동 규정 제8조(평가자문위원회)에 의거 자체평가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해 교무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가 있음

○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 대학은 자체평가규정 제4조(평가영역)에 의거 교육·연구 영역, 조직·운영 영역, 시설·설비 영역, 기타 영역으로 명시하고, 2022학년도 자체평가 시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평가요소와 동일하게 ‘대학의 사명과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으로 평가영역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 대학의 자체평가영역을 기관평가인증 요소와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대학중장기발전계획 핵심성과지표(KPI), 학과평가지표, 교원업적평가지표, 교육만족도조사 등의 평가지표와 연계되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대학은 자체평가규정 제3장(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2022년 자체평가결과 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였음
- 대학은 핵심성과지표 및 주요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지표점검 및 달성도 측정, 각 지표별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공시 지표별 전국순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육통계시스템(BI)을 운영함

○ 자체평가 시행 실적

- 2022년 대학자체평가 시 자체평가규정 제7조(자체평가위원회)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TF 및 자체평가실무위원회(행정부서 팀장·과장)를 구성하여,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7개의 기준(대학의 사명과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지원,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재정 및 시설)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개선이 필요한 평가요소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함
- 2022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최종 심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 * 평가요소명 :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 * 권고내용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명칭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 (관련부서/전공교육혁신센터)
 - * 권고내용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명칭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 (관련부서/전공교육혁신센터)
 - * 개선계획 : 교육과정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명칭을 재정립. 그에 따라 2022학년도 학과발전계획 역량기반 교육과정 보고서 작성대상 9개 학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명칭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2022학년도부터 학과별 교육과정개발 보고서 작성 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명칭 일원화 함
 - * 개선실적 : 2022학년도 학과발전계획 역량기반 교육과정 보고서 작성 대상 9개 학과(필수 8개 학과, 신청 1개 학과) 교육과정 보고서 수정. 학과 교육목표수립, 4-2 직무별 현장 전문가 선정 및 위원회 구성 항목에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구성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일괄 수정함, 2023학년도 학과발전계획 역량

기반 교육과정 보고서 시행(안) 수정 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일괄 수정하여 안내함

○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 자체평가 결과는 자체평가규정 제8조(평가자문위원회) 및 제16조(평가결과보고)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함
- 자체평가 결과를 전자문서와 포털 게시판으로 부서에 통보하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수요자들이 교육품질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와 대학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함

○ 교육만족도 조사체계

- 대학은 교육만족도조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교육만족도 조사의 범위) 및 제3조(교육만족도 조사 시기)에 의거하여 매년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학생서비스, 학사운영, 교육환경, 전공별 학과운영, 교원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교육만족도조사를 실시함
- 교육만족도조사운영규정 제4조(교육만족도 조사 운영 부서)에 의거하여 미래전략기획실의 총괄 운영 아래 입학·홍보팀, 교무지원팀, 학생지원팀 및 산학협력지원팀이 각각 신입생,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5조(교육만족도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만족도운영위원회에서 교육만족도 총괄계획, 운영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대학은 교육만족도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학생만족도조사 문항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학생만족도조사 및 산업체만족도조사의 경우 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함
- 만족도조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포털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부서별 제위원회의 검토와 교육만족도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함

○ 교육만족도 조사실적

- 2022학년도에 총 5개의 조사대상 그룹의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입학관리팀에서 신입생 만족도조사, 교무지원팀에서 재학생만족도조사 및 졸업생만족도조사, 산학협력단에서 산업체 만족도조사, 학생지원팀에서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시행함
- * 신입생 만족도 조사: 학생 입학정보, 학생복지 등(총 15문항)
- * 학생 만족도 조사: 비대면 수업 및 행정서비스, 학사제도 및 학과 생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대학 혁신, 취·창업, 학생지원, 대학 인프라(2022년 7개영역 103문항)
- * 졸업생 만족도 조사: 교원 및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진로 및 취업 프로

그램, 학사행정 및 학생서비스, 대학 이미지(2022년 5개영역 22문항)

-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일반특성, 교육여건, 교육운영, 학습지원제도, 브랜드가치(2022년 4개영역 13문항)
- * 산업체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사업인지도, 산학협력지원, 현장실습 만족도, 졸업생 고용 만족도 (2022년 5개영역 24문항)

○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 신입생 만족도 조사와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
 - * 통학버스 운행 증대 및 개선요구: 남양주 통학버스 노선 신설(2022년 3월), 통학버스 관제시스템 도입(2022년 3월)
 - * 교육여건 및 교육운영 만족도 향상요구: 유아교육과 강의실습실 환경개선공사(500,000천원), 맞춤형 외국어 회화교육 프로그램(20,000천원) 진행
- 산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 현장실습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함
- 재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
 - * 국어, 수학과목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하위 30%학생 맞춤 콘텐츠 제공 및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 대학 생활 적응 및 적성 검사를 시행 평생 지도 교수제와 연계하여 위험군별 인성학습상담센터 연계 체계 확립 및 전문가 상담지원, 신입생 심리 및 대인검사 지원(MBTI) 신입생 739명 실시 검사결과 이해를 위한 지도교수 및 학생용 동영상 제작 배포, 한림성심 BEST마일리지 배점표 및 지급기준을 개선, 장학금 지급금액 확대, 학생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소통공감 캠퍼스 조성에 따른 기존 학 생자치기구, 동아리 실환경개선공사)44,440천원_
- 대학은 2022학년도 교육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별 2023학년도 환류계획으로 장학금 지원 확대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함

세부기준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제7장(직제) 제3절(대학)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총장, 대학 본부, 부속시설, 산학협력단, 학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8조(직제) 및 제9조(산학협력단)에 근거하여 직제규정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무분장규정에서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8조(직제) 및 직제규정 제3조(사무분장)에 의거하여 대학교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부서와 부속기관의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학칙 제77조(제위원회)에 의거하여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비롯한 4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확인

- 대학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에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지원사업단(혁신지원사업단, 후진학선도형사업단, LINC3.0사업단)을 두고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입학처, 취·창업지원처, 사무처, 부속기관(도서관, 정보전산원, 평생교육원, 생활관, BLS교육센터, 한림성심학보사, 한림유치원, 산학협력단)으로되어 있으며, 처와 실, 단, 원에는 팀 또는 센터의 하부조직이 있음
- 2022학년도에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직제개편 및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정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하여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분장 일치화 함
-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제6장(교직원) 제1절(교원), 제4절(사무직원) 및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7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직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체계와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분장표로 세부 내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포탈시스템) 도입 및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포털시스템 내 업무매뉴얼 게시판에 탑재하여 공유함
- 대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 위기 상황에 비상 대응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함

○ 대학의 규정체계

- 대학은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입안절차), 제6조(자문), 제7조(제정 및 개·폐)에서 규정의 입안부터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위원회의 자문, 교무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통한 공포까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한림성심대학교의 제 규정은 학교법인, 학칙, 일반행정, 인사행정, 교무행정, 학생행정, 부속기관, 제 위원회, 기타로 구분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제정, 개·폐하고 있고, 현재기준(2023. 2. 28) 총 153개의 규정이 있음

○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 제 규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의 제정, 개·폐 관리부서를 정책기획팀으로 정하고, 입안부서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기획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에 심의, 상정함. 특히, 학칙 개정 시에는 교무위원회 심의 후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공포하고 30일 이내에 대학알리미에

공시함

- 규정 제·개정 및 폐지 공포 후에는 관련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 규정게시판과 전자결재시스템(포털) 규정게시판에 탑재하여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 대학의 문서관리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하는 모든 문서들은 적용범위, 성립 및 효력, 처리, 작성, 기안과 결재, 발송과 접수, 보존과 폐기 등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공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 일련번호가 생성되어 기록, 보관, 관리되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비밀문서는 교육부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보안업무내규 제12조(비밀의 취급), 제13조(비밀의 보관)에 의거하여 비밀문서 등 대외비 문서를 총무팀에서 보안업무관계철에 수신 및 발신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공개여부,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 대학은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제8장(대학평의원회),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70조(대학평의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및 학생,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대학은 등록금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03.25.자로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8-5-11)을 제정함
- 대학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규정에 의거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미래전략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학생,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2.03.07.자로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학생을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함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사립대학(학교법인) 예산유의사항 및 2019회계연도 예산 제출 안내(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16894,

2018.12.20.)에 의거하여, 기금이 없는 경우(특례규칙 계정과목중 원금보존기금적립 및 임의기금적립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계상,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내됨에 따라 학교법인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

- 대학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77조(제위원회)에 의거, 교무위원회규정 제2조(구성)에 따라 총장, 부총장, 주요보직자 및 부속기관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주 1회 운영함. 교무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전자결재 시스템(포탈)에 게시하여 교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 대학은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과 학칙 및 관련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법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일정,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학홈페이지에 회의소집 사전예고와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대학알리미에 공시함
-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관 제3장(기관)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부터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대학알리미에 공시함
- 대학은 교직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학과장회의(월 1회), 전체교수회의(연 2회, 2월, 8월), 직원·조교 정례회의(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의(분기별 1회), 팀장회의(상시 개최) 등 다양한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 열린총장실, 대학생활문의게시판을 운영하고 건의사항들은 각 부서에 전달되어 개선함. 또한,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학과 대표 학생들이 참석하는 학생소통간담회(연 2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개선함

○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조치

- 대학의 학사구조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5조(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별표1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과정 입학정원은 2020학년도 22개학과 1,066명, 2021학년도 22개학과 1,046명, 2022학년도 20개학과 921명, 2023학년도 19개학과 859명임.
-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학과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조정)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5조의2(학과구조조정)에 의거 세부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학과구조조정위원회), 제6조(구조조정의 범위 및 시기), 제7조(폐과기준), 제8조(폐과유예), 제9조(구조조정진행절차), 제10조(폐과절차), 제11조(폐과결정에 따른 이행 의무), 제4장(과원기준), 제5장(전공전환교육), 제6장(희망퇴직) 등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

- 학과 폐지(폐과) 결정에 따른 학생 보호는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제10조(폐과 절차) 및 학칙의 부칙(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으로 정하여 재학생 졸업시 까지 학과를 유지하고, 휴학생 및 복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운영규정에 따라 전과를 허용하고, 종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과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종전 학과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학과 폐지(폐과) 결정에 따른 교원의 보호는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제11조(폐과 결정에 따른 이행 의무) 제2항에 의거하여 신설학과 제안 및 배치, 학과 소속변경(희망학과 50%이상 교원동의 필요), 전공전환교육(희망학과 50%이상 교원동의 필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으로 정하고, 교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심의는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
- 학사구조개편(학과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조정) 절차는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제9조(구조조정진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학과자체조정계획 의견수렴과 폐과기준(제7조)에 따른 대상학과를 학과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상학과로부터 자구노력계획서 제출 받아 자구노력계획서 검토, 폐과유예 검토, 대상학과 면담,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에서 논의 후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과구조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 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확정함
- 대학의 학과개폐, 통폐합 등 학과 개편에 사항을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결과(2017.06.27.) 권한을 위임 받음
- 학과 폐지(폐과) 결정에 따른 교원 신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과 동의 여부와 학과 등을 확인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치함
 - * 2개학과 폐과 소속교원 2명 중 1명 조치 확정, 1명은 희망학과와 계속 협의 중
- 학과 폐지(폐과) 결정에 따른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과 휴학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생의 원에 의해서 전과, 복학, 자퇴를 처리함. 연락이 안되는 학생에게는 2학기에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임

1.2.2 재정 운용

- 예산 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
 -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장단기 재정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종합계획은 발전계획에 포함함(대학중장기발전계획서 p.95).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은 정부의 등록금 완화 추진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학생 수 감소 등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최근 4~5년간 수입과 지출 분석을 통해 발전계획의 추진과제별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함
 - 대학은 교비 재원 예산수립 시 예산요구 및 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통해 각

단위부서(학과, 부서) 공지하고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 (예산요구 및 편성지침 국고 재원은 LINC3.0사업(2022~2027년), 혁신지원사업 (2022~2024년), HiVE사업(2022~2024)의 사업계획서에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함. 예산관리부서는 각 단위부서(학과,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취합 받아 교무위원회의 심사 조정을 거친 후, 교직원 및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구성원 의견을 반영함. 행정부서는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매년 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요구하고 확정된 예산은 부서운영계획서에 반영함.

○ 예산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확인

- 대학은 회계개시 2월전까지 예산요구 및 편성지침을 정함
- 법인은 회계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법인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회계개시 35일전까지 법인회계 중 학교전출금 등을 학교에 통보함
- 대학은 회계개시 1월전까지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회계개시 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여 회계개시 10일 전까지 각 대학에 예산 승인을 통보함
- 법인은 회계개시 5일전까지 확정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개시 5일 전까지 예산을 공개함
- 대학은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학평의원회(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심의), 이사회(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일로 15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하고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함
- 대학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함
- 대학은 사무분장규정 및 예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은 미래전략기획실(정책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예산집행은 예산을 배정받는 단위부서(학과, 부서)로 하고, 결산은 사무처(재무팀)에서 담당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을 분리하여 수행함
- 대학의 적립금(기금)은 연 2회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적립 목적별로 예치/관리하고, 기금 사용 시에는 적립금인출 수입 및 지출 계정에 각각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함(교비회계 결산서 부속명세서-현금및예금명세서 2022년 , 적립금의적립및사용명세서 2022년)
- 직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 처리에 대한 사용 계획은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함
- 2022학년도 결산서 내에 등록금, 비등록금회계 부속명세서 (미사용차기이월자금내역 및 사용계획명세서)를 통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이월로 구분하여 사용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음, 등록금회계의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이내에서 이월함(교비회계 결산서 부속명세서-미사용차기이월자금내역및사용계획명세서, 2022년)

* 2022회계연도 결산 : 기타이월금 100,000천원 / 등록금회계 수입 총액 17,768,630천원 = 0.56%

○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예산관리부서에서 매월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 대학의 재정운영에 평가를 위해 대학발전TFT를 구성하여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연차평가 시 대학전반의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환류함(2021대학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 2022대학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

- 재정운영 평가(2021 중장기발전계획 연차평가)에 따른 2022년 주요 개선 및 환류실적
* 혁신지원사업 재정분석

- 개선요구 :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수법, 제도 개편, 교육 환경 구축 지원이 필요함
- 환류실적 : 혁신지원사업(22-24)에서도 2021 연차평가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수법강화(Shift_N+1혁신교수법 고도화, 미래교육플랫폼 기반 교수법 개발 및 적용, Synergy up을 위한 교수법 지원)를 추진하였고 교육 환경 구축 지원으로 에듀테크강의 및 실습환경조성(학과 및 학생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임대 : 53백만원, 학과별 교육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교육용 기자재 구매 : 346백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환경 개선 : 336백만원, 교실 수업 및 동시 원격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 10백만원, 안전진단 및 안전 환경 개선 : 36백만원/ 총 781백만원, 과제를 수행함
- 개선요구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지원, 산학협력, 지역연계, 대학경영 등에 대한 균형적인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 환류실적 : 영역별 비중이 교육혁신 73.3%, 산학협력혁신 6.3%, 학생지원혁신 4.5%, 사업운영 및 관리 15.9%에서 교육혁신 46.8%, 산학협력혁신 4.1%, 기타혁신 21.8%, 사업관리및운영 27.3%로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정하여 편성 집행함

* LINC3.0사업 재정 분석

- 개선요구 : 사회수요기반 신산업 융복합교육 운영과 에듀테크 기반 산학 교육 활성화가 요구됨
- 환류실적 : 산업체 수요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산학연계 직무관련 특강 장소의 부족으로 폐과대상 학과의 전공 강의실을 공동강의실로 구축, 대상 강의실을 모두 현장 미래형 강의실로 구축함으로써 에듀테크 기반 산학 교육 활성화에 기여
- 개선요구 : 대학-산업체-지역사회 간 공유협력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파편화된 산학협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관계가 필요함
- 환류실적 : LINC3.0사업에서는 지자체와 연계 협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지자체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원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로 취업 미스매치해소,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역연계 혁신 구현을 대외적으로는 직업교육 거점 산학협력대학으로 위상강화, 추후 RISE 사업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위해 대응전략과 협력 도모, 지자체-대학-산업체 및 직능단체와 연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산학협력 혁신 구현을 기대하고 있음.

* 교비회계 재정분석

- 개선요구 : 학과 구조조정, 행정구조 조정, 희망퇴직, 온라인강의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인건비 비율을 감축하여야 함 (2021년 자체평가보고서)
- 환류실적 : 학사구조 개편(2022학년도 3개학과 폐지, 2023학년도 2개학과 폐지), 교원 희망퇴직(2023.02.28.일자 사직 4명)

○ 교육비환원율 : 충족(100.0% 이상)

- 평가기간 내 평균 140% 이상으로, 평가인증 충족 요건 100.0% 이상을 상회하므로 충족 판정함.
- 2021회계연도 153.2%(총교육비 23,830,858천원 / 등록금수입 15,553,192천원)

○ 다양한 재원 확보 실적 확인

- 대학발전기금조성운영규정(3-1-20)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공헌자 인센티브 및 후원의 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대학발전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함

* 대학발전기금 수입 현황

- 1) <2021년결산> : 교비 96,979천원
- 2) <2022년결산> : 교비 108,723천원

- 대학은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단기수강료수입(2021년결산 62,847천원, 2022년 결산 66,038천원(2022년 결산서), 대학의 시설물 등을 대여함으로써 교육부대수입이 있음(2021년결산 531,823천원, 2022년 결산 625,143천원(2022년 결산서))
- 대학은 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금을 법정부담금(100% 부담), 경상비전입금 등의 학교 운영경비로 지원받음(대학정보공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동일 법인인 한림대학교에서 통합 공시함)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설치학교 운영경비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22결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부담액/소득액*100) : 86.1%(58,835,772천원/68,360,873천원*100)

- ※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학교운영경비 부담액(2022년 결산 588억원)은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 통틀어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치학교에 대한 법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

○ 재원 확보 노력 확인

- 대학은 2020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발전기금 유치, 평생교육원 운영, 법인전입금 부담, 시설 대여, 적립금 금융권 예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였음

- 각종 외부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혁신지원사업(2022~2024), LINC3.0사업 (2022~2027), HiVE사업(2022~2024)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함(산학협력단결산서 부속명세서-지원금수익명세서 2021년 결산서, 2022년 결산서)
- 안정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확대 : 대학은 매년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비교견적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자금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에 의거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증가함
- * 이자수익 실적 : 전년대비 16,046천원 증가(11.3%, 2022결산 219,610천원 / 2021결산 197,227천원)

1.2.3 감사

○ 감사 관련 규정 준수

- 우리 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전체 부서의 행정 및 재정 전반에 걸친 외부 감사 및 자체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교비회계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감사가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이사장에 보고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회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거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음
- 재단 감사 규정에 의거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재단 감사실의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받고 있음

○ 감사 관련 담당부서

- 내부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감사실(7명으로 구성, 감사업무 전담, 재단 및 병원/학교)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으로 감사일정(3주~4주)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표에 의거하여 대학 총무팀에서 감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외부감사는 업무분장표에 의거하여 교육부 등 회계감사의 경우 정책기획팀에서, 법인 회계감사의 경우 재무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 대학은 상위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내부신고 절차,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공익신고자보호규정을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 소속의 구성원이 내부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신분보장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 사립학교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대학 홈페이지(매년 5월 31일 감사보고서 공시)에 공시함으로써 대내 및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1.2.4 대학의 책무

○ 윤리 규정 확인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함
- 대학의 건학이념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 목표 등을 정한 한림성심대학교헌장이 있음
- 대학은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 있음.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대학에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센터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2022.07.01.자로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을 폐지함
- 대학은 학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 상담, 처리, 교육 등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이 있음
- 대학의 교직원으로 직무 수행 시 지켜야할 윤리적 기준, 책임과 의무에 대해 취업규칙 제3장(복무), 교원인사규정 제8장(복무및연구년), 직원인사규정 제6장(복무) 등의 규정이 있음
- 대학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채용 또는 입학시 제출한 학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학위검증위원회규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및보호에관한규정, 교육부훈령에 의거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보안업무내규, 학칙 제12장에 의거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학생준수규정, 학교 기숙사 생활시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학생생활관사생준수내규 등의 규정이 있음
- 대학은 직무 수행 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계약 시 거래업체와 「용역청렴이행 서약제」를 시행함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인증평가일 기준으로 미이행중인 1건의 지적사항(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이 있음. 처분요구에 대해 이행하기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하고자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춘천시청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 10. 24기준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설계용역 계획 수입 및 지자체와

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

- 2022학년도 기준 학교법인 및 대학은 전·현직 이사장 및 법인 임원, 총장, 주요보직자 등에 대한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행정, 재정적 처분 및 검찰 수사, 기소,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

- 윤리적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폭력 예방 관련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봉사계획 확인

- 대학은 재난, 재해 및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교직원간의 공동체 의식제고와 봉사정신 함양의 목적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자원봉사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봉사단의 운영계획에 따라 강원도대학발전육성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계획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 지역사회 봉사실적

- 대학은 재난, 재해 및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교직원간의 공동체 의식제고와 봉사정신 함양의 목적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자원봉사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강원도대학발전육성사업을 통해 2022년 집행실적 5,530천원, 70명(학생 54명, 교직원 14명, 전문위원 2명)이 헬스케어 나눔 프로그램 및 빵 꾸러미 교육을 실시함
- 혁신지원사업사업 지역사회재능 기부로 2022년 집행실적 10,374천원, 21개 학과 학생 397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함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확인
 - 대학은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과 창의적 지성을 지닌 전문직업인양성’ 이라는 대학사명 선언문을 통해 ‘성심을 다해 학생을 성공시키는 명문 직업교육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과 대학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개발절차에 따른 요구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학칙 제 33조(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에 대한 비율과 현장실습, 대학공통필수교양운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에 관한시행세칙 제13조(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관련 위원회(교과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개발 주기는 교육과정운영규정 제9조(개발절차), 제10조(교육과정 개선주기)에 의거하여 학습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 유지하되 학과에서 1년 주기로 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확인
 - 학과의 교육과정개발(개편)은 대학의 정책 및 교육목표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혁신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
 - 학과의 현장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규정 제7조(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9항을 준수하여 재학생 또는 졸업생, 산업체 수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과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혁신교육과정과 사회맞춤형교육과정으로 개발함
 - 학과의 핵심직무 조정 및 교과목 재편성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해 산업체 자문 또는 교육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인력양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대학은 학과별로 개발된 교육과정안에 대해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회 자문(심의)을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해 확정함
 - 대학은 매년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를 위해 학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학과에 제공함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참여산업체 현황 및 확산계획, 참여산업체 건실성, 협의회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반영하여 편성 및 운영함

-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학과별 개편된 현장직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외부환경 및 요구를 기반으로 핵심 직무, 관련 직무역량, 연관 역량을 설정하고 대학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과목을 편성함
-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공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심의함
- 2022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필수 8개 학과, 신청 1개 학과로 개발하였음
- 2022년 현장직무 역량기반 교육과정 단계적 확대 운영 및 다양한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개 트랙 6개 과목 12학점의 창의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 2022년도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학점 시수 및 심의, 현장실습교과목 편성 심의, 폐강 교과목 심의, 사회맞춤형교육과정 편성 심의, 분반개설심의,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 심의 등을 진행하였음(7회, 2022.01.06, 2022.01.26, 2022.03.23, 2022.07.25, 2022.08.17, 2022.06.15., 2022.09.19)
- 대학평의원회는 2022학년도 대학 교육과정 학점 및 시수 기본 편성기준, 교양교과 편성기준 및 창업교과 편성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기준, 사회맞춤형교과목 편성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였음(2022.02.17.)

○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은 바른 품성을 갖춘 따뜻한 사람, 전문기술력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 융복합적 사고를 겸비한 융합적인 사람의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지식융복합, 창의적사고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 대학은 학칙 제33조(교육과정) 1항의 교육과정의 구분, 학칙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교육과정), 제47조(졸업 및 수료) 3항의 학제별 이수학점, 교육과정운영규정 제4조(담당부서 및 편성기준), 제6조(교수학습운영위원회), 제7조(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및 제 12조(교육과정 검증 및 심의)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을 함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은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수학습운영위원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확인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과 수요분석 및 고등교육정책 등 대내외여건 분석과 대학의 발전계획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핵심역량기반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목표 및 운영방향을 설정함
- 핵심역량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에서 도출한 대학 핵심역량기반 핵심교양, 기초교양, 직업기초 교양으로 구분하고 학제별 교양학점 편성 비율을 이수학점의 15% 이상 편성하도록 함

○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

- 담당 교원 및 재학생 대상 교양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대학 교양교육과정은 핵심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하여 외부환경과 요구를 기반으로 학과 핵심직무, 관련 직무역량, 연관 역량에 따라 대학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과목을 편성함

세부기준 2.2 교육과정 및 질 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 전공교과목은 계획과 설계, 학과별 개발 및 운영, 직무역량 측정, 내외부 검증(교과별 CQI, 학과CQI, 대학CQI) 절차로 학과와 대학차원의 전공교육 목표를 구현함
 - 대학의 관련규정은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3조(교육과정) 1항의 교육과정의 구분,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3조(교육과정),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7조(졸업 및 수료) 3항의 학제별 이수학점, 교육과정운영규정 제4조(담당부서 및 편성기준)과 제7조(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및 제12조(교육과정 검증 및 심의),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운영규정 제9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3조의4(창의융합 전공교육과정운영) 및 창의융합전공 교육과정운영규정 제6조(과정이수) 등에 근거하여 전공교과의 편성을 규정함
 - 교육과정의 개정 및 학과의 교과목 신설, 변경, 삭제와 같은 통상적인 교육과정 개편작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과 총장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2022학년도 학과발전계획 및 혁신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에 따라 학과별로 개편된 혁신교육과정은 외부환경 및 요구를 기반으로 핵심직무, 관련 직무역량, 연관역량을 설정하여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관련 전공교과목을 편성함
 - 교육과정운영규정 별표 1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을 교양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은 총 이수학점의 15% 이상(간호학과 25학점 이상)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교육과정 편성기준 별표 1에 근거하여 수업형태 구분이 실기인 과목의 시수는 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시 지정된 신청서에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비율을 40%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함
 - 현장실습 교과목은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일반학과의 경우 표준형(4학점)과 자율형(1학점, 2학점), 학과자율(최대 20학점)의 실습과 전문자격 취득학과(2학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창업교과목은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근거,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하며 학과별로 연간 1개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3조의4(창의융합전공교육과정운영)에 의거,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창의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창의융합전공과정 운영규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

- 학과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학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과발전계획 및 혁신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에서 도출된 직무역량, 지식 및 기술,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함
- 학과의 홈페이지는 학과의 인재상, 학과의 발전전략, 교육목표, 학년별 교육과정과 교과목 이수체계(로드맵), 교과목 소개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규정 제13조(성취수준)에서 학생들이 교과목별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능력 수준을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학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교과목에서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항목과 문항을 상세히 제시 및 관리하고 있음

○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공지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4조(강의계획서)에 따라 모든 교원은 대학의 학사행정지원시스템(New NCS시스템)에 개강 1주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의계획서는 교육(학습)목표, 학습내용, 평가방법, 성취수준, 주차별 강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업의 내용과 평가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함
- 강의계획서 공지는 학습자가 학사행정지원시스템(New NCS)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1주차 수업시간에 공지하고 있음

○ 관련규정 및 준수확인

-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의 신청 및 구매, 취득, 등록, 보존,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한 자산관리규정이 있음
- 대학은 기재자의 선정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기재재심의위원회와 관련 규정이 있음
- 대학은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교수, 연구원,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이 있음
-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에 조직과 직무,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사고방지,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예산, 안전관리기록과 보존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 실적

- 실험실습 기자재 수요조사는 기재재심의위원회규정 제4조(기능)에 의거하여 부서 및 학과 예산계획 수립 시 기자재 확보 계획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국고사업에서 추가로 배정된 예산은 학과에 공지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기재재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함
- 기재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자재는 자산관리규정 제2장(자산의 구매)에 의거,

신청부서(학과)에서 구매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함

- 구매한 기자재는 자산관리규정 제3장(검수 및 취득)에 의거, 비품관리카드를 작성, 자산 등록, 학내 자산관리시스템에서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는 사용현황(일지작성 및 실습실 배치)을 별도로 작성 보존함
기자재 유지보수, 손상실, 불용, 관리전환, 반출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산관리규정 제4장(자산의 관리운영)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함
- 담당 부서는 자산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관리규정 제5장(자산실사)에 의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방학기간 중에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 자산은 자산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상 기자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함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확인

-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및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안전교육)에 의거하여 연구 활동종사자 반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안전교육은 2022년도 1학기 교원 100명 중 97명 이수(97%), 학생 1,950명 중 1,770명 이수(90.7%), 2022학년도 2학기 교원 119명 중 109명 이수(91.6%), 학생 1,887명 중 1,702명 이수(90.1%)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6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보험가입 등), 대학의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예산 및 건강검진) 따라 매년마다 연구 활동종사자 보험을 갱신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따라 매년 1학기 수업종료 후 실험·실습실 정밀안전진단 실시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학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2022년도 실험·실습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안경, 화학장갑,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비치, 위험물 안전보건표지 부착, 피난기구(유도표지) 부착, 가스배관 흐름 방향표기, 의료폐기물 전용 덮개 비치, 폐액관리 통 구입 및 비치, 불량 환풍기 공사 등 지적사항을 개선함.

○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 충족 (평균 157천원 이상)

- 2021결산 237천원(실험실습비 659,671천원<교비 : 394,409천원 + 산단 : 265,262천원> / 2,780명)

○ 학년도별 전공강좌당 학생 수 : 충족(평균 33명 이하)

- 2022학년도 1학기 28.9명(총 수강학생 수 16,606명/ 개설 전공강좌 수 575개), 2022학

년도 2학기 28.3명(총 수강학생 수 16,536명/총 개설강좌수 585개)으로 2022학년도 평균 전공강좌 당 학생수는 28.6명(총 수강학생 수 33,132명/총 개설 강좌 수 1,160개)임

○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의 전공교육 운영에 대해 평가 및 환류는 교육혁신원규정 제4조(전공교육혁신센터) 6. 데이터 기반 교육품질개선(CQI) 관리 사항, 교육만족도조사운영규정 제5조(교육만족도조사운영위원회) 교육만족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규정 8조(교육과정 개발방법) 5단계 평가 환류 사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음
- 대학과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평가 환류는 대학에서 지정한 추진체계 및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산업체 자문 및 재학생/졸업생(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품질개선을 준수함

○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

- 학과 전공 교과목별 교육 과정 운영과 평가에 대한 교과목 품질개선보고서(CQI)를 작성(현장중심교육과정, 사회맞춤형교육과정), 학과별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현황에 따른 개선방안이 포함된 혁신교육과정 운영보고서(CQI)를 작성하여 전공교육혁신센터에 제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함
- 학과별 교육품질관리 CQI 보고서 작성 시 전공교육의 운영에 대해 학과현황, 교육환경 영역(강의실/실험실습실, 기자재 및 도구), 교육과정 영역(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육성과 영역(취업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직무능력 성취도)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환류를 진행함
- 대학 교육품질관리 CQI 보고서 작성 시 각 학과에서 제출한 보고서(CQI)를 토대로 현장직무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육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대학 교육품질관리(CQI) 보고서에 반영함

○ 평가 및 환류 실적 확인

- 대학 전공교과목은 계획과 설계, 학과별 개발 및 운영, 직무역량 측정, 내외부 검증(교과별 CQI, 학과CQI, 대학CQI) 절차로 학과와 대학차원의 전공교육 목표를 구현함
- 매학기 교과목별 교육품질관리(CQI) 보고서를 통하여 강의내용, 수업운영, 학습성과, 강의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음
- 학년도말 학과별 교육품질관리(CQI) 보고서를 통하여 학과현황·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로 영역을 나눠 주요 개선사항 및 환류계획을 도출하고 있음
- 학년도 말 대학 교육품질관리(CQI) 보고서를 통하여 대학 비전 및 교육목표·자체평가총괄·항목별 자체평가 내용·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교육환경개선·교육과정 운영·교육성과·만족도로 영역을 나눠 지속적인 질 관리 자체평가 환류사항을 도출하고 있음

- 2021년도 교육환경 여건, 교육과정 영역, 교육성과 영역에 대한 평가 후 개선사항 도출과 차기년도 환류 계획을 위해 교육품질관리 CQI 보고서를 작성(전체 과목 대상 교과목 CQI, 학과 CQI 22건, 대학 CQI 1건 작성함)
- 2021년도 Shift N+1 혁신교수법 적용 과목에(187개 교과목) 대한 만족도 조사를 2회 진행하였고 교수 만족도 평균은 3.8점(1차 3.7, 2차 3.9) 학생 만족도 평균은 3.5점(1차 3.4, 2차 3.6)으로 차년도 개선방안으로 학생 수가 많은 분반의 경우 가중치 적용방안, 주차별 키워드 수 유연성, 우수사례 및 설명회 개최 등 개선안을 도출함
- 2021년도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설 과목에(2개 트랙 10개 교과목) 대한 만족도 조사를 2회 진행하였고 학생 만족도 평균 4.05(1차 3.9, 2차 4.2)임. 1차 학생만족도 조사 시 실습시간이 부족하고 2개 트랙 교과목 수업내용이 중복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2학기부터 개설 교과목 학점을 트랙별 2학점 2개 과목에서 3학점 1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함
- 2021년도 1, 2학기 전공교육 운영 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전임교원 워크숍을 2회 진행하였으며 평균 210명 참석(93.4% / 전임교원 74명, 겸임교원 70명, 강사 65명)하였고 강의평가 결과 1학기 4.38점(전임 4.4점, 겸임 4.36점, 강사 4.35점), 2학기 4.34점(전임 4.36점, 겸임 4.31점, 강사 4.3점)으로 나타남
- 2022년도 교육환경 여건, 교육과정 영역, 교육성과 영역에 대한 평가 후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교육품질관리 CQI 보고서를 작성(전체 과목 대상 교과목 CQI, 학과 CQI 21건, 대학 CQI 1건 작성함)
- 2022년도 Shift N+1 혁신교수법 적용 과목에(282개 교과목) 대한 만족도 조사를 1회 진행하였고 교수 만족도 평균은 3.6점(비전임3.67, 전임3.52) 학생 만족도 평균은 3.38점으로 2021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짐. 분석결과 점수는 낮아졌지만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의견이 증가하였으며 차년도 개선방안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모델을 적극 권장하여 만족도 향상의 개선안을 도출함
- 2022년도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설 과목에(2개 트랙 6개 교과목) 대한 만족도 조사를 2회 진행하였고 학생 만족도 평균 4.3(1차 4.31, 2차 4.3)임. 2021년도에 비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승함
- 2022년도 1, 2학기 전공교육 운영 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전임교원 워크숍을 2회 진행하였으며 1회 참석 95.8%(전임 78명, 겸임 3명, 강사 78명), 2회 참석 97.5%(전임 76명, 겸임 7명, 강사 81명)으로 나타났고, 강의평가 결과 1학기 4.37점(전임 4.43점, 겸임 4.33점, 강사 4.25점), 2학기 4.38점(전임 4.45점, 겸임 4.34점, 강사 4.25점)으로 지속적인 비전임교원 워크숍을 통하여 강의평가 결과가 2021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됨
- 우리대학의 전공교육은 창의융합교육과정 개설, 비전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과목별 학생 맞춤형 개별 피드백의 수업방식인 Shift N+1혁신교수법 도입과 운영계획 및 방법에 대한 설명회, 지속적인 결과공유와 환류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영역에서 2021년도 70.9점에서 2022년도 75.7점으로 학생만족도가 향상됨

○ 학사제도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학위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칙 제·개정을 통하여 학사관리를 함
- 학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한림성심대학교학칙 및 학칙에관한시행세칙을 기본으로 학사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갖추어 운영함
- 대학의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의 규정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학사 관련 및 기타 규정을 상시 공지하고 있음

○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 확인

- 학사관리 관련 규정은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접수된 규정 제·개정 신청서를 전체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하고 총장 결재를 받아 공표함
- 학사관리 규정은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교무위원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 내부 교직원들을 위해 포털/전자결재 시스템의 규정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고 규정 자료를 게시함
- 대학 홈페이지는 규정자료와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PC,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제공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지식산업융합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규정 제14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계약학과 교과과정 편성 등을 심의, 의결함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K-MOOC 학점 인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K-MOOC강좌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5-1-33) 및 제7조(학점인정절차) 및 제8조(성적반영)에 근거하여 이수학점 인정 및 성적을 부여하고 있음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의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실현하도록 편성됨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 정책을 위한 학칙 제 33조(교육과정), 교육과정운영규정 제7조(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및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교양교과목을 운영함

○ 추진체계 확인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운영은 대학에서 정한 규정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 결재 후 운영되고 있음

- 학과별 교양교과목 편성 여부는 공문으로 제출한 교양교육과정표를 통해 확인

○ 운영 실적 확인

- 학제별 교양교과목은 2년제 12학점, 3년제 18학점, 4년제 26학점으로 총 이수학점의 15%이상을 편성
- 핵심교양 인성과 소통(1학점)은 1학년 1학기, 인성과 멘토링은 1학년 2학기에 전학과 필수 개설
-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NCS직업기초능력 10개 능력 중 2개 영역(4학점)을 학과별로 지정하여 운영, 단 ‘AI융합영어교과목’ 개설 학과에 한하여 AI융합영어 2학점, 핵심 교양-직업기초 학점을 2학점으로 편성 가능
- 기초교양은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학과 자율로 개설 운영하되 총 교양교과목 개설 비율을 15% 이상 편성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 확인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의 평가와 환류는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 산업체 만족도조사, 부서운영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 평가·환류 계획 수립
- 담당교원, 재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 확인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수학습운영위원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교양교육만족도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 타대학 교양교육 사례조사를 통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함, 타대학 사례조사는 강원도립대학교외 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담당부서 및 수강신청관리 교양 운영 현황,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2022학년도 1학기 교양교육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는 인성과 소통 영역이 3.97, 진로 관련 교양 영역이 3.46, 기초 교양영역이 3.72, 전체 평균이 3.7로 나타났음
- 2022학년도 2학기 교양교육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는 인성과 소통 영역이 4.15, 진로 관련 교양 영역이 3.92, 교육과정전반 영역이 4.11, 전체 평균이 4.06으로 나타났음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환류 현황 보고
- 학과 구분 없이 교양교과목 수강을 원하고, 더욱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길 원하는 의견에 따라 2023학년도에는 전체학과 대상으로 자율교양을 실시함

3.1.1 학생선발

- 학생선발 기준 공시 및 대학 정보 제공 확인
 - 대학의 사명인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과 창의적 지성을 지닌 전문직업인 양성」과 대학의 교육목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람됨을 앞세운 인간교육,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에 부합하는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공지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수립, 공표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토대로 입학전형관련 위원들의 심의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 학생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매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요강 등을 대학 정보공시센터를 통해 수시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 확인
 - 공정한 입학전형 계획의 수립과 학생 선발을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엄격히 구분하여 구성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하고 있음
 -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 확인
 - 공정한 입학전형 계획의 수립과 학생 선발을 위하여 대학 제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엄격히 구분하여 구성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하고 있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수립, 공표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내용 중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학은 모집시기별 지원자가 교직원 본인 및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 자진신고 및 입학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회피, 제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학업능력이 아닌 특정학생(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평가에도 학력(성적)이외의 별도 신체검사 등의 차별 행위를 시행하지 않음’을 명시 공고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입학전형 사정심의 및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 신입생 충원율 : 충족(매년 신입생 충원율 평균(유동성 기준)의 90% 이상)
 -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88.3%로 비수도권 충원율 평균 85.9%의 90% 이상 충족
 -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88.3%로 전체 충원율 평균 86.9%의 90% 이상 충족

-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확인
 - 대학은 신입생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입시결과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지원 경로, 지역별 지원 및 등록인원, 모집시기별 지원 및 등록인원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차후년도 신입생 모집 전략을 모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음,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형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있음

-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 확인
 -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 * 학생들의 입시성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학년도 수시1차 정원 내 면접위주특별 전형을 신설 및 간호학과 면접 반영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학생부 출결 반영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림
 - * 간호학과 수능최적학력 기준을 국어/영어/수학 중 최우수 2개 영역의 합산등급 8등급 이내에서 국어/영어/수학/탐구 중 최우수 2개 영역의 합산등급이 8등급 이내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수능 성적 부담을 줄임
 - 신입생 모집 주무부서와 입학정원 조정 주무부서가 입시결과분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과 통폐합을 비롯한 정원 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신입생 모집요강)을 공표하기 이전에 학과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차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하고 있음
 - *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학과 의견을 수렴하여 레저스포츠과의 수시2차 일반고특별전형을 신설 신청 하였음

3.1.2 학사 및 수업관리

- 학점 당 수업시간(시수) 준수 확인
 - 대학은 학위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칙 제·개정을 통하여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규정 및 제·개정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의 규정전용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음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14조(수업일수)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제34조(학점의 이수)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 또한,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7조(수업일수) 수업은 연간 30주

(매학기15주)이상의 법정 수업일수를 실시함.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3조(학점)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은 15시간 이상 30시간까지 강의를 1학점으로 학점당 수업시간(시수)를 관리하고 있음

- 학사일정 및 수업일수 편성표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15주차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업을 운영함

○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 확인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40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제41조(출석인정) 학생은 질병검사, 예비군 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1조 2항에 따라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에 대해서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및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대학은 엄정한 출석관리를 위해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8조(시험), 제28조(출석점검), 제29조(출석인정)을 통해 무단결석자의 관리, 지각 및 조퇴에 대한 처리방법, 대리출석 금지 및 적발 시 처리방법,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자 관리,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결석자의 처리 기준 등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기 결석자의 성적처리를 위해 학과로부터 대상자를 접수 받으며,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출석인정 기안문을 제출함. 또한,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2조(제적), 제42조(평가시험), 제64조(징계)의 내용으로 엄격하게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출석점수는 평가계획서에 제시한 배점으로 출석성적 기입란에 입력하고, 시간단위 출석부를 활용하여 출석현황(출석, 결석, 지각, 조퇴)을 기록하여 성적에 반영함
- 출석점수는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의 계획에 제시한 배점으로 출석성적 기입란에 입력하고, 출석부(전자출결시스템)에 학생의 15주차별, 교시별 출석현황(출석, 결석, 지각, 조퇴)을 입력하여 성적에 반영함

○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14조의 2(휴강의 절차 및 보강)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휴일, 학교행사,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학회참여 등 공적인 사정에 의한 휴강일지라도 당해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 후에는 보강결과보고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지원팀에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어 휴·보강을 관리하고 있음
- 교과목 담당교수는 개인적, 공적의 사유와 상관없이 휴·보강계획을 작성함
- 휴·보강 및 출장신청 시 시간표와 자동 연계 처리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수업 기간을 준수하고 휴강을 할 경우, 담당교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보강결과보고서를 학과장 결재 후 담당부서로 제출함

○ 강의시수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8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및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1조, 15조, 26조(강의시간), 강사료지급규정 제5조(강사료의 지급), 제6조(책임시간 일부 면제)규정을 갖추어 강의시수를 관리하고 있음
- 전임교원 강의시수는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8조(교수시간) 2항에 근거하여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있음
- 겸임교원의 강의시수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11조(강의시간)에 매주 9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초빙교원의 강의시수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15조(강의시간)에 매주 9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강사의 강의시수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26조(강의시간)에 매주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칙에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2(강의배정) 1항에 따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임교원은 주당 18시간 이내의 수업을 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은 주당 3일 이상으로 나누어 수업하여야 함. 단, 보직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로 배정하고 있음. 또한 2항에 근거하여 수업의 질과 집중력 제고를 위해 모든 교원은 1일 주간, 야간 수업을 포함하여 6시간 이상 연속 강의를 금지하고 있음

○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는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8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및 강사료지급규정 제4조(책임시간 준수)에 따라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직자에 대해서는 강사료지급규정 제6조(책임시간 일부 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책임시간을 적용하여 일부 면제시간을 부여하여 책임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또한 강사료지급규정 제5조(강사료의 지급)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해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및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9조(수강신청)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재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교과목의 이중학점 취득 불인정,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상 시 개설, 하지만 수강인원이 개설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 할 수 있다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0조(수강신청 정정) 신청 교과목은 지정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며, 복학, 시간표의 변경, 강사의 출강불가 및 폐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이수 및 대체과목 신청) 취득 성적 C+등급 이하 일 경우 제이수, 제이수 성적 취득 시 이전 성적 무효화 및 대체과목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학적변동(휴학, 복학, 재입학 등) 및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수업(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대체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2조(편입생 수강신청)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학운영규정 제 7조(학점인정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교육과정은 일반 재학생 수강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어 수강신청을 관리하고 있음

○ 수강 신청 지도 체계 확인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9조(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 정정), 제11조(제이수 및 대체과목 신청), 제12조 (편입생 수강신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관리하고 있음

○ 학사경고 관리 체계 확인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6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및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30조(학사경고)에는 해당 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다음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1.0 미만일 때는 재차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 내용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학생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1조(유급) 학사 경고를 동일학년의 1, 2학기를 계속 2회 받은 학생은 유급된다 및 유급된 학생은 해당학년의 전과목을 재수강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학점 중 평점이 3.0 이상인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여 재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8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및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한다는 규정으로 학사경고자 관리 및 유급 처리를 하고 있음
- 평생지도교수운영규정 제5조(지도교수 임무) 제3항 제3호 에 의거 휴학, 복학 등 학사 및 학업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학생 지도를 통해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 재학생 등록유지율 : 충족(80.0% 이상)
 -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현황 및 4-라. 학생충원현황 결과 2022학년도 88.33%이므로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80.0%이상)을 상회하므로 충족함
 - 2022학년도 대학정보공시 학생충원현황 정원내 충원율 97.6%, 전체 충원율 110.3%

- 재학생 관리 체계 확인
 - 대학은 평생지도교수제운영규정(6-1-7)에 의거하여 재학 중 학생의 학업·진로·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 및 사회생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기 위한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있음. 지도교수는 매 학기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에 작성하여 관리하고있음
 - 학생이력관리규정(6-1-13)에 의거 학생의 이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자기역량 계발을 도모하고, 진로설계, 적성검사, 어학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축적하여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률을 제고를 위한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학생들의 휴학 및 자퇴시 사유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를 하고자 상담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였음
 - 셀프예비졸업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졸업학점을 스스로 관리하고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졸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평가 확인
 - 대학은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학생복지위원회규정(8-2-3)에 의거 평가 및 심의 후,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활용 및 차년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환류를 통해 대학정책 및 부서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 홈페이지 열린총장실 및 학생참여광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매년 소수 학생 소통간담회, 학생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은 학생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반영하고 있음

-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개선 실적 확인
 - 대학은 학생 소통 공감 간담회를 통해 총장과 학생들의 소통 및 건의사항 반영하여 대학의 혁신적 학풍을 조성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중도탈락을 예방하려 노력하였으며, 2022학년도 학생 소통 공감 간담회 44명, 다문화 학생 간담회 87명, 장애학생 간담회 5명 참여하였음
 - 대학은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 및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실 리모델링, 돔 휴게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건물 전체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을 위한 연구실 유리강화도어 설치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음

- 대학은 장학금 소외자 해소를 위해 장학금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 우애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이외에도 2022학년도에 신입생 등록율 향상 및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디딤돌장학금 2유형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음. 원거리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376명, 2학기 348명, 가정생활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디딤돌장학금 총 447명, 2학기 디딤돌장학금 390명, 면학장학금 154명, 학업장려장학금 34명에게 지급하였음
- 대학은 학생 상담지도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돕기 위한 다각적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성격유형(MBTI)검사, 마음힐링프로그램, 토닥토닥 마음건강 집단 상담, 고위험군 상담프로그램)
- 학과 특성과 현장 요구에 맞는 자격증 교육으로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23개 학과 24개 전공,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참여대상 1,951명, 참여학생수 1,762명, 참여율 90.3%)
- 교수역량전문화를 위하여 교육역량 개발 지원(65명, 참여 82.3%), 교강사 워크숍(463명, 96.7%), 교원 소양교육(71명, 88.8%)을 지원하였음. 교수법 강화를 위하여 Shift_N+1 혁신교육법 운영/ 고도화 진행(282개 교과목, 213명 참여), Synergy up을 위한 교수법 지원(특강 2회, 153명 참여), 교수법 진단 및 개선(12명 참여)을 지원하였음
- 대학은 지도교수별 학생 집중상담을 실시하여 재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및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액티비티 활동(Lunch with Studentes)으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2,518명, 2022학년도 2,573명 참여하였음
- 대학은 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On·통 (온통)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수와 학생의 소통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온(On)라인 콘텐츠와 SNS활용 등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과 및 학생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선·후배간의 정보교류 및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106명, 2022학년도 16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 인성학습상담센터운영규정(6-1-18)에 의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생활과 각종 고민, 문제 등의 해결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개인상담, 대학생활 적응검사, 심리검사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성학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발달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응으로 중도탈락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1,272건, 2022학년도 936명 실시하였음
- 대학은 창의융합전공교육과정운영규정(5-1-30)에 의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수업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함. 또한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통해 제6조(과정 이수) 1항, 전공과목 1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하는 기준에서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함으로 개정(2021년 7월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 창의융합전공교육과정운영과정(5-1-30) 제6조(과정 이수) 3항, 제1항과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의 학위와 별지 1서식의 이수증을 수여한다 및 제7조(장학금지급) 창의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에 의거하여 전 과정을 이수한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칙(2-1-1) 제27조(재입학) 제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교수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제28조(전과)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적기간 중 1회에 한함. 단, 산업체위탁생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에 따라 재입학 및 전과 제도를 시행하여 재입학, 적성 불일치 및 진로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있음
-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2명, 전과 9명, 2학기 재입학 7명, 전과 11명 / 2022학년도 전과 1학기 11명, 2학기 전과 9명, 재입학 1학기 2명임

3.1.4 학업 성취도 평가

○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칙(2-1-1) 제10장 성적평가 및 졸업 규정의 제 42조(평가 시험), 제43조(추가시험), 제 44조(성적), 제45조(성적의 취소), 제46조(학사경고), 제47조(졸업 및 수료), 제48조(유급)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음. 평가 시험에 관해서는 제42조(평가시험)로 교과목별 성적 평가 방법과 시험응시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18조(시험) 제1항에서 시험 방법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준하여 실시함을 명시함. 또한 제2항으로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과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으로 관리함을 규정함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조(목적) 교육목표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직무능력성취도 및 향상도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되는 직무능력성취도 및 향상도 평가에 관련하여 제11조(평가도구)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등의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에 의해 준수함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2조(평가방법) 3항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2회 이상 실시하되, 직무수행능력평가 배점 중 70% 이상은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구성하되, 능력단위요소의 단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지식,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였음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 13조(성취수준) 1항에는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행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판정한다는 규정을 준수함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4조(성적반영)2항 직무능력 평가결과는 전체 배점 중 70% 이상 반영하며, 직무능력평가의 종합평가 점수는 출석평가 점수, 차시별 직무능력평가 점수, 재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을 준수함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5조(직무능력성취도 산출) 직무와 관련된 직업 기초능력과 전공능력의 교과목에 대한 수업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능력성취도, 학과별 직무능력성취도, 직무별 직무능력성취도, 대학전체직무능력 성취도의 평가결과를 산출한다는 규정을 준수함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6조(이의신청)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학과장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등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

- NewNCS 시스템에 담당교과목 교원이 직접 작성한 교과목명세서,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를 기반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직무능력성취도및향상도평가규정 제13조(성취수준)에 의거 학생들이 교과목별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행정도에 따라 같이 1~5수준으로 분류하여 판정하였음
- 성취기준은 평가개요,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시기 영역별평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평가계획서에 의거하고 있으며, 성취기준은 충족/미충족으로 판정함
- 강의계획서에는 평가방법,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주차별로 수업내용, 수업활동을 계획하여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2조(평가지험)에 따라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한 것으로 처리함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4조(시험성적의 평가)에 의거하여 학업성적은 정기시험, 출석상황, 실습, 과제물, 수시시험에 의거하여 담당교수가 재량에 의하여 종합평가 하며,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산업체위탁,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창의융합전공 교육과정,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융합학과 유형 및 연합학과유형)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대평가의 성적등급 분포와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세칙으로 명시함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3조(추가시험)에 의거하여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한하여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성적정정)에 의거하여 성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 1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있음

○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 확인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7조2(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해당학기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담당교원은 학생의 이의신청 후,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 후 사유가 타당할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성적평가 규정에 따라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 및 학과로 해당 공문으로 안내하여 성적열람 기간 중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학생정보시스템으로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2022학년도 1학기 1건, 2학기 21건의 성적정정 신청이 있었으며, 2022학년도 1학기 1건, 2학기 20건의 성적이 정정됨

○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실적 포함) 확인

- 2020년 재수강 기준을 C+(79점) 이하로 강화하여 재수강 학생의 학업 성적 향상을 도모함

3.1.5 원격수업

○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 본교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기능, 원격수업 개설, 강의 진행, 출결관리, 수업평가, 콘텐츠개발과 관리, 저작권 등 원격수업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천재지변 및 재난상황으로 인해 정상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별도의 지침은 총장이 정함
- 원격수업운영 준수 확인 내용은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시한 차시별 영상녹화시간 준수, 강의교안 탑재, 과제제시, 출결관리 등에 대하여 주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완·시정하도록 함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367호, 2021.02.15.)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활성화 기본법 시행령(2022, 03.25)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운영규정을 개정함(2022.05.31.)

○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확인

- 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운영 교과목을 선정함
- 원격수업 운영 교과목에 한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음

○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인

- 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강의 교안 및 기타 자료를 탑재하고 있음
- 대학은 매 학기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학과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음
- 대학은 학습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학습전략과 학습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성과 부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성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여 이러닝을 활용한 수준별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있음

○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 확인

- 본 대학의 원격수업 강좌 개시와 종료는 원격수업운영규정(제6조 강의개시 및 종료)에 의거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르고 있음
- 원격수업규정 제7조(강의 및 진행)에 의거하여 원격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은 매학기 15주 이상,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함
- 원격수업 콘텐츠는 1학점 기준으로 1차시 당 재생시간이 30분 이상으로 학습시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콘텐츠는 학기 종료 후 6개월 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게시하고 있음
- 출결관리는 학칙 제41조(출석인정) 및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출석인정)과 원격수업운영규정 제12조(출결관리 및 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원격수업 출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주차별 학습기간 내에 시청, 각 차시별 기준시간 이상 시청으로 출석인정 기준은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수강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

○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확인

- 원격수업 성적평가(중간고사 등)는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14조(시험)에 의거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평가를 하고 있으며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작시간, 종료시간, IP 주소 등의 평가 근거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 과제, 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함

○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확인

- 본 대학의 원격수업 콘텐츠는 원격수업운영규정 제8조(콘텐츠 선정 및 개발)와 제16조(콘텐츠 질 관리)에 의거 개발 및 모니터링과 질 관리를 하고 있음
- 원격수업 콘텐츠는 본교에서 신규로 직접개발하거나 보유중인 콘텐츠 또는 외부 수주에

의해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함

- 원격수업 콘텐츠 및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운영규정 제 2장에 의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출결관리, 수업시간 준수, 과제 피드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비대면(온라인)수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현황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음

세부기준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 교수학습지원 추진 체계 확인

- 대학은 교육혁신원규정에 의거 교수학습 지원 및 연구개발, 교수 연구 지원, 교수학습 교육매체 제작지원, 교양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연구 개발, 학습관리시스템(LM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타 교수학습지원 및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였음
- 교육혁신원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개발, 개편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교육혁신원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원격수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교육혁신원규정은 2021. 07. 27.자로 제정됨)
- 교수학습 지원 추진내용으로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 특강, 교수법 연구지원과 교수학습 매체제작 지원 및 녹화 스튜디오 관리, 원격수업운영지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지원함
-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자인 교수자의 신청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참여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수요자인 교수 대상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22학년도 Synergy up을 위한 교수지원 프로그램(교수법 특강)은 총 2회차(2개 주제, 4시간) 진행되었으며 1차 특강은 전문대 학생에게 교양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주제로 비대면 특강을 진행, 2차 특강은 다양한 교수법 활용과 적용 사례를 주제로 대면 특강을 진행, 총 146명(중복포함)이 참여함(1,948천원 집행),사전 요구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교수법 특강을 시행하고, LMS 및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특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류 의견 수렴
- 2022학년도 교수법 진단 및 개선은 12명(의무대상자 6명, 신청자 6명)이 참여하였고 여성건강간호학 외 11개 교과목을 촬영하고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함(4,980천원 집행)이후 결과보고서 제작 및 제출, 의무대상자 선정 및 업

적평가 반영에 대한 개선 및 환류 의견 수렴

- 22학년도 교수법 진단 및 개선 의무대상자 중 2021학년도 강의평가 하위자(4.0 미만) 3인은 교수법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이후 2022학년도 강의평가에서 4.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
- 2022학년도 e-learning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은 전임교원 8명이 참여하였으며 간호관리학 외 7개 교과목이 개발 완료됨(1,764천원 집행) 신청기간을 학기별로 나눠 지원하는 방향 및 원격수업운영규정에 근거한 사전 조사를 통한 비전임교원 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
- 2022학년도 교수법 특강 및 e-learning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강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 혁신지원사업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다양한 강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77.8점으로 종합만족도인 73.9에 비해 4.9점 높은 점수를 받음

○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확인

- 대학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에 대한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사후 평가를 통하여 향상도를 측정하고 있음
- 2022학년도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는 대학 LMS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21개 학과, 총 2,097명(국어 894명, 영어 882명, 수학 321명)이 참여하였고, 대학 전체 평균 점수는 61.8점(국어 67.5점, 영어 67.9점, 수학 67.4점)으로 나타남
- 2022학년도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은 의무대상자(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하위30% 대상자) 및 기타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680명(국어 280명, 영어 289명, 수학 111명)이 참여하여, 461명(국어 200명, 영어 185명, 수학 76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자 중 우수향상자 44명(국어 19명, 영어 19명, 수학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함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확인

- 대학은 재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인성학습상담센터운영규정(6-1-18) 제2조 5항에 따라 관리 운영·지원하고 있음
- 2022학년도 학습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법 특강’, ‘MLST-2 학습전략검사(온택트 학습법 컨설팅)’, ‘학습역량 에세이 공모전’, ‘맞춤형 외국어 회화교육’, ‘실전 TOEIC 캠프’를 운영함
- ‘2022학년도 학습법 특강’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1, 2학기 각각 운영하였으며 대면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1학기에는 ‘대학시험전략 및 정서 다루기(87명 수료)’, ‘바르고 매력적인 글쓰기(106명 수료)’,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트의 기술(58명 수료)’, ‘A+리포트 작성법(69명 수료)’ 등 4개 강좌를 운영, 총 320명이 수료함
- 2학기에는 ‘자신감을 높이는 스피치, 언어의 온도 37.5도(60명 수료)’, ‘아날로그 코넬 노트법과 디지털 메모(85명 수료)’, ‘대학생 100명 중 99명이 틀리는 맞춤법(71명 수료)’, ‘게임을 활용한 입이 뻥 뚫리는 영어 학습법(52명 수료)’ 등 4개 강좌를 운영, 총 268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아날로그 코넬 노트법과 디지털 메

- 모' 특강과 연계하여 '코넬 노트 공모전' 을 진행하고 우수자를 시상함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MLST-2 학습전략검사' 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컨설팅(온택트 학습법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MLST-2 학습전략검사' 는 신입생(920명) 및 신청자(182명)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총 904명이 수료함
- '온택트 학습법 컨설팅' 은 2022학년도 MLST-2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한 재학생 중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100명 모두 수료함
- '2022학년도 학습역량 에세이 공모전' 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모 주제를 '효과적인 학습활동 및 활용 매체 소개, 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하루 일상(시간관리전략),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비법, 성적관리법 등' 을 주제로 설정하여 시행, 10개 학과 총 37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부·외부심사를 통하여 시상자 18명(최우수 2명, 우수 7명, 장려 9명)을 선정하여 시상함
- '2022학년도 맞춤형 외국어 회화교육' 은 전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 100명을 받아 1:1 원어민 화상 회화(50명 수료)와 온라인 회화 강의(49명 수료)를 지원하였음
- 재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 및 공인어학점수 취득·향상을 위해 '실전 TOEIC 캠프' 를 시행함. 7개 학과, 전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37명이 참여하여 28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자 중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해 우수향상자를 선정, 총 6명의 학생에게 시상함

○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학생의 신청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참여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학생 대상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자체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학습법 특강' 에서는 기존의 특강으로만 끝나는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습득한 내용을 실전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코넬 노트 공모전' 과 연계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시상을 통해 참여 동기 또한 강화함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교육', '학습역량 에세이 공모전', '맞춤형 외국어 회화교육', '실전 TOEIC 캠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 및 우수향상자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실전 TOEIC 캠프'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시간 화상 특강 형식에서 대면 합숙 캠프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전-사후 테스트 향상도를 근거로 시상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2020년부터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현, 학습역량 에세이 공모전)를 통해 우수한 학습법, 시간관리 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공모전 진행 기간이 시

협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모 일정을 조정 진행함

- 인성학습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음

○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확인

- 강의평가운영규정(5-1-32)에 의거하여 강의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하고자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강의평가운영규정 제6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에 따라 대학 홈페이지에 강의평가 우수교원(상위 30%)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에 대해 세부 이행사항을 부여하여 강의역량 향상을 도모함
- 대학 전체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5점 만점) 기준 2020년 1학기 4.4점, 2학기 4.46점 등 대체로 높은 강의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전임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 기준 2022년 1학기 4.42, 2학기 4.45점의 결과를 나타냄

○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법 향상과 관련하여 교수법 특강, 교수법 촬영 및 진단 사업,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2022학년도 교수법 특강은 총 2회차(2개 주제, 4시간) 진행되었으며 1차 특강은 ‘전문대 학생에게 교양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주제로 ZOOM활용 비대면 특강을 진행하였고 72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 특강은 다양한 교수법 활용과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로 대면 특강을 진행하였고 74명이 참여함
- 2022학년도 교수법 촬영 및 진단은 12명(의무대상자 6명, 신청자 6명)이 참여하였고 아동간호학 외 11개 교과목의 수업을 1회 촬영하고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함
- 2022학년도 교수법 촬영 및 진단의 의무대상자 6명(강의평가 하위 10%교원 및 신입 교원)은 강의개선보고서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자 6명은 교수법 진단에 따른 환류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함
- 2022학년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전임교원 8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원은 간호관리학 외 7개 교과목에 대한 e-learning 콘텐츠 개발 사업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함

○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교수역량 강화 및 의무화 지원 결과 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예산, 제도, 기타, 운영 결과에 따른 효과 항목을 자체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개선하고 환류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함. 특히 비대면 교육과 관련한 강의자료 질 향상 관련 연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여 강의자료(영상, PPT) 제작 관련 연수를 진행함
-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Shift N+1 혁신교수법 469개 교과목(2021년 187개, 2022년 282개)을 진행하였고 교수대상 만족도 실시를 진행하였으며 2021학년도 평균 3.8점,

2022학년도 평균 3.6점을 기록함. 학습자 중심의 수업 진행과 진행 시 다양한 매체와 자료의 활용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교수 강의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적 부담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개선 방안 및 환류 사항을 도출함

- 대학은 2022학년도 전임교원 하계 연수를 개최하여 전임교원 77명이 참석하였고, 교수법 특강, Shift_N+1 교수법 활용 강의, 우수 혁신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며 교원 역량 강화를 도모함
- 대학은 비전임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였으며, 1학기 워크숍은 겸임교원 73명(92.4%), 강사 78명(98.7%), 2학기 워크숍은 겸임교원 77명(97.5%), 강사 81명(95.5%)이 참석함. 워크숍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방향 및 목표를 공유하고, 학사 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대면수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함

4.1.1 산학협력활동

○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산학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림성심대학교 학칙 제6조(교직원), 제7조(교직원의 임무), 제9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정관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직제규정 제14조(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 제26조(산학협력지원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기준점수와 평가유형),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5조(하부조직), 제19조(운영위원회), 제20조(심의사항),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14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취·창업지도위원회규정 제2조(기능), 제3조(구성),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제2조(현장실습지원센터), 제4조(조직), 학과산학협동위원회규정 제2조(목적), 제5조(구성), 가족회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3조(담당부서), 3단계산학연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단(LINC3.0사업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4조(조직구성), 제6조(수요맞춤형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기업협업센터(ICC)운영규정 제3조(조직), 제4조(운영위원회), 공용장비센터운영규정 제3조(조직), 제4조(운영위원회), 직무발명규정,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설치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제4조(평가위원회), 제5조(평가기준), 혁신지원사업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3조(사업단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지급기준 지침과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의거하여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 대학은 다양한 산학협력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으로 산학협력지원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4차산업혁명기술체험센터로 1개의 팀과 2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장 1명, 산학협력부단장 1명, 산학협력정보담당관 1명, 산학협력지원팀 직원 1명, 전담직원 1명,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 1명, 직원 1명, 전담직원 1명, 4차산업혁명기술체험센터 센터장 1명, 전담직원 1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취·창업지원처는 취창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창업지원처장 1명, 취창업지원팀에 팀장 1명, 직원 1명, 전담직원 1명,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전담직원 1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LINC3.0사업단은 교육운영팀, 산학연협력팀, 진로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NC 3.0사업단장 1명, 팀장 3명, 책임교수 3명, 직원 1명, 전담직원 5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업협업센터(ICC)는 센터장 1명, 책임교수 3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공용장비센터는 센터장 1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혁신지원사업단은 교육혁신팀, 산학협력혁신팀, 학생지원혁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지원사업단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전담직원 3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

- 대학은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노력으로 교원인사규정 제20조(임용직위),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 산업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는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될 수 있음. 산업체 등 근무 경력에서 국가, 민간산업체, 자격증 소지자, 병원, 성직자 등 관련 근무 경력이 있을 시 환산인정률 100%로 인정하고 있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규 임용자는 2021년 4명, 2022년 2명이며 모두 산업체 경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대학은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5조(기준점수와 평가유형)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평가는 표준형과 산학협력중심형으로 시행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중심형으로 평가를 받으며 표준형은 산학 영역 점수 30점, 산학협력중심형은 산학 영역 점수 50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 대학은 연간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부서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 연간 산학협력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협력활동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활동 지원에 대해 크게 가족회사 관계 강화지원, 신규 산업체 발굴 지원, 학과 산학협력협의회, 산학연협력협의회, 가족회사한마당, 분야별 ICC협의회, ICC클러스터,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컨설팅, PBL 팀프로젝트, 산학협력 EXPO, 만족도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각 세부내용에 따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가족회사 관계 강화 : 80건 / 102업체 참여 / 집행실적 8,580천원, 신규 산업체 발굴 지원 : 86건 / 88업체 참여 / 집행실적 7,587천원, 학과 산학협력 협의회 : 4건 / 12업체 참여 / 집행실적 630천원
- 산학연협력 협의회(산학연협력네트워크 강화, 신규 산업체 발굴, 학과 산학연협동위원회) : 산학연협력네트워크 강화 90건 / 117업체 참여 / 집행실적 8,860천원, 신규 산업체 발굴 87건 / 114업체 참여 / 집행실적 7,549천원, 학과 산학연협동위원회 53건 / 167업체 참여 / 집행실적 5,802천원
- 가족회사 한마당 : 산학협력 교류실적 우수 기관 감사패 전달 38개사, 참석자 78명(내부 40명, 외부 38명), 집행실적 13,150천원
- 분야별 ICC협의회 : 의료·보건 ICC 협의회 / 협의내용 의료·보건 ICC 공유협업을 위한 강사 협의 / 참석자 7명(내부 4명, 외부 3명) / 집행실적 180천원, 미래형콘텐츠·디자인 ICC / 협의내용 2023년 강원 콘텐츠, 디자인 분야 자원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방향 논의 / 참석자 65명(내부 5명, 외부 60명) / 집행실적 1,130천원
- ICC클러스터 : 협의내용 유료가족회사 운영 및 혜택 논의 및 기업협업센터(ICC) 역할 및 지원방향 제시 / 참석자 15명(내부 8명, 외부 7명) / 집행실적 411천원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 총 4개 과제,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특허 1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1건), 집행실적 39,183천원
-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컨설팅 : 기술지도 과제 수 35건, 산업체 기술·경영컨설팅 과제 수 73건, 집행실적 49,487천원
- PBL 팀프로젝트 : 참여학생 29명, 5개팀(참여 산업체 5개사), 집행실적 19,740천원
- 산학협력 EXPO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18개 학과 40개팀 참가, 코너스톤 경진대회 20개 학과 25개팀 참가, 4차산업혁명기술체험 4개 체험 프로그램 123명 참여, 초음파 의료영상 장비 체험 78명 참여, 기초 건강관리 활동 81명 참여, 취업상담 186명 참여, 취업매칭 멘토링 DAY 72명 참여, 가족회사 초청 특강 103명 참여, 창업특강 27명 참여, 취업설명회 31명, ICC 클러스터 24명, 집행실적 61,118천원
- 만족도 조사 : Hallym-CSI 산업체 만족도 조사 / 종합만족도: 80.8점(전년대비 0.7점 상승), LINC3.0사업 참여 산업체 만족도 / 종합만족도 : 71.9점, 집행실적(Hallym-.CSI 산업체만족도 조사 + LINC3.0사업 만족도 조사) = 22,000천원

○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 가족회사한마당
 - * 평가결과: 산학협력 교류실적이 활발한 가족회사 총 38개사에게 감사패 증정하여 대학과 가족회사 간 유대감 강화
 - * 개선내용: 전년도 가족회사 한마당과 다르게 외부 행사로 진행하여 규모를 확대 운영, 가족회사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여 성과 공유
- 분야별 ICC협의회
 - * 평가결과: 의료·보건 ICC와 BLS센터와의 공유·협업을 통하여 유료 재직자 교육에 관한 정보 및 네트워크 확대, 강원 콘텐츠 분야 산업체와의 공유·협업을 통해 ICC센터의 역할과 네트워크 확대
 - * 개선내용: 의료·보건 ICC의 다양성을 위해 유사 ICC대학과 업무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분야 지원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많은 산업체와의 연계
- ICC클러스터
 - * 평가결과: 기업협업센터(ICC)설립목적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여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회사 지원 혜택을 안내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유도
 - * 개선내용: 분야별ICC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야별 공유·협업 방향 논의 및 유료 가족회사 연회비 비용과 지원 혜택을 논의하여 조정함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 평가결과: 다양한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1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1건), 예산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개발 필요
 - * 개선내용: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산학협력 성과 창출함
- 기술지도 및 기술경영컨설팅

- * 평가결과: 기술지도 35개 과제 수행, 기술·경영컨설팅 73개 과제 수행, 산업체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실무능력 및 취업률 향상
- * 개선내용: 기술지도, 기술·경영컨설팅 참여 산업체 및 과제 수행 수를 높여 자율성과 지표 달성
- PBL 팀프로젝트
 - * 평가결과: 팻푸드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완료, 산업체와의 팀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취업 연계로 맞춤형 산학협력 네트워크 성과 도출
 - * 개선내용: 팀프로젝트 과제 결과물의 제품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및 특허 출원 지원 확대 및 과제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분한 시제품 제작 기간 확보
- 산학협력 EXPO
 - * 평가결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지난 EXPO와 다르게 3년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어 다양한 특강과 상담, 체험부스 및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환류내용: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스탬프, 추첨권)확대를 통한 참여 유도 강화, EXPO 개막식 및 폐막식 진행 전 사전리허설을 진행하여 준비 강화
- Hallym-CSI 산업체 만족도 조사
 - * 평가결과: 2022년 종합만족도 80.8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향상함, 차원별 만족도는 ‘산학협력사업 및 지원체계’가 83.1으로 가장 높고, ‘현장실습’은 80.6점, ‘졸업생 고용’은 78.6점으로 전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되었음
 - * 환류내용: 산업체는 대학과 현장실습 참여를 가장 희망하여 현장실습 실무 교육을 확대, 졸업생 고용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상승하고 있음
- 산학협력 제도개선
 - * 평가결과: 유료 가족회사 등급을 신설하여 차별화된 지원 혜택 강화, 산학협력정보 담당관 보직을 추가하여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학생연구자 적용범위, 연구참여계약 체결,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 지급, 안전보장, 위반시 조치 내용을 개정함, 3D프린터공용실습실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사무분장 규정,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함,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평가는 표준형과 산학협력중심형으로 시행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중심형으로 평가를 받으며 표준형은 산학 영역 점수 30점, 산학협력중심형은 산학 영역 점수 50점으로 평가로 배점 향상
 - * 환류내용: 가족회사 등급을 신설하여 지원 혜택 강화 및 산학협력 수익 발생, 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배점을 강화함

4.1.2 취·창업 지원

○ 취·창업활동 지원 규정

- 직제규정 제9조(취·창업지원처), 사무분장규정 제3절 (취·창업지원처), 제14조(취·창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제3조(업무), 산학협력단정관 제4조(산학협

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6조(산학협력지원팀), 의거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취·창업 활동과 취·창업 지원 협력 부서로의 취·창업활동 내용을 지원하고 있음

○ 취·창업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

- 취·창업지원처는 학생들의 폭넓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지원팀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되어있으며 취·창업지원처장의 총괄아래 취·창업지원팀은 취·창업지원 팀장 1명, 취·창업지원 담당직원 1명이 취·창업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등 업무분장표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혁신지원사업단과 LINC+3.0사업단에서 각 1명을 지원받아 자격증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센터는 현장실습센터장 1명, 팀장 1명, 담당직원 1명이 현장실습 업무를 하고 있음
- 취·창업 지원협력기구는 교내 유관부서와 교외 유관부서로 나누어 교내 유관부서는 학과(학생들의 대학생활, 수업 진로등 상담), 인성학습지원센터(인성과 예절,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부여 지원), 학생지원팀(대학생활적응검사, 심리검사, 집단상담, 성격유형 상담지원)이 있고, 교외 유관부서는 고용노동부(학과의 산학 및 취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체결, 가족회사종합관리를 하는 산학협력단과 학생들의 취업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민취업지원제도)등이 있으며 교내·외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취업지도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유관부서 상호 지원을 하고 있음

○ 취·창업활동 인프라 구축 노력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지원으로는 취·창업지원처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프로그램 수립, 운영, 평가, 개선을 위해 취·창업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창업지도위원회는 가족회사 관계자를(외부 산업체 인사)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 하고 있으며,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의 취·창업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혁신지원사업과 LINC+지원사업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2022년 취·창업 지원활동 관련 약 14개 프로그램에 100,291,316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음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학생들의 취·창업 활성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교원업적평가(학생·취업지도 평가 기준)에서 취업지도와 평생교수지도제(매년 2회 이상 교원들이 학생들과 취·창업을 포함한 상담)를 활용하고 있음. 교육과정운영규정을 통해 창업교과목에 대해 학과별 연간 1개 이상 편성토록 제도화하였음
- 지속적인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학 내 H-CAP[학생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창업 지원에 용이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

- 대학은 산업체 및 학생 요구조사에 따라 연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 하여 매년 취·창업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취·창업지도위원회를 통해 연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 연간 취·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취·창업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취·창업 프로그램을 조사 및 선정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대학은 취·창업지원에 대한 연도별 각 세부내용에 따른 실적은 취·창업프로그램 실적은 2022년 취·창업 지원활동 관련 약 14개 프로그램에 100,291,316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음
- 창업관련 운영 실적은 2개 프로그램 3,366,980원을 지원하여 창업특강과 창업지원을 하였음.

○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 대학은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를 위해 취·창업지도위원회(외부 산업체 인사 포함)를 구성하여 매년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결과, 학생들의 수요조사,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심의, 의결하여 차년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있음
- * 2022년 주요 환류내용으로는 학과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위해학과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컨설팅 프로그램, 취업캠프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함
- 각 연도별 취·창업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학생 및 산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취업프로그램 재학생 및 졸업생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취·창업지원 사업등을 통해 다양한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취·창업지원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인프라 등을 차년도 취·창업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의 신규 산업체 발굴과 산업체와의 관계강화 위해 매년 대학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평가 및 환류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량 취업처 발굴 및 가족회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취업률 및 취업 질 제고에 노력함
- 대학은 취·창업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 및 취·창업 향상을 통해 2022년 정보공시기준 71.5%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음

○ 건강보험및국세DB연계취업률 : 충족(전체 60% 이상)

- 2022년 공시 기준 71.5%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졸업자 1,096명중 621명 취업, 진학자 135명, 입대자 74명, 외국인 유학생 5명, 제외 인정자 13명임

4.2.1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한림성심대학교 학칙을 기반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학칙 제13조의2(현장실습), 제33조(교육과정), 제35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범위 등), 제36조(수업), 직제규정 제9조(취·창업처), 사무분장규정 제13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및 현장실습운영규정, 현장실습운영위원회규정, 현장실습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 현장실습 지원 조직은 대학 내 현장실습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인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으며 산업체와 다른 부서들과 함께 연계체제를 갖추고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대학 본부의 취·창업지원처 산하에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으며 처장 1명(부서내 업무 총괄), 센터장 1명(현장실습지원센터 총괄), 팀장 1명(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 총괄), 현장실습 실무담당자 1명(현장실습 업무 전반 담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실습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현장실습 추진체제는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우리 대학만의 현장실습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현장실습지원 활동을 위한 지원조직 체제와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H-cap(학생이력관리시스템)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 확인

- 현장실습에서의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지침)은 현장실습운영규정 제5조의 2(현장실습 수업 운영) 2.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산업체 전담교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지침 및 운영매뉴얼 제6조(센터의 의무) ②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전 직장예절,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근로기준법, 안전교육 등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현장실습 참여학생 의무 및 권리보장)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을 하고 있음
- 현장실습 안전지원 체제 관련하여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학생의 교육 및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교수를 위촉하고 있으며 2022년 288개 산업체에 전담교수 288명을 위

축합.

- 현장실습 전 직장예절 및 안전, 성희롱 교육, 재난등에 대한 LMS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89명 참여 하였음.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학차원에서 전원 상해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고 표준형 현장실습의 경우 산업체에 산재보험가입을 설명하고 권장하고 있음
- 학과의 현장실습 전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및 센터에서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하여 현장실습 적응도와 중간점검을 통한 학생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간 중 학교 지도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중간점검을 하고 있음

○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

-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계획은 부서운영계획서와 학과별 현장실습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학과별 현장실습의 시행과 결과까지 전담하여 운영하며,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시행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교비 및 각 국고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행방식에 따라 1일 6시간이상 주 40시간 이내로 4주 운영되며 4학점이 부여되는 표준형 현장실습과 1주 15시간 이내로 2주 운영되어 2학점이 부여되는 자율형 현장실습으로 구분됨(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적용 제외의 경우 필수형으로 구분함)
- 현장실습 지원 센터의 행정적 지원으로는 현장실습 운영지원(연간계획 수립, 보험가입, 협약 등 사전운영 지원과 현장실습 계획에서 결과까지 관리 체계 지원), 수요자 요구 반영 및 현장실습 질 관리(참여학생 및 참여 산업체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차년도 사업 피드백,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운영위원회 구성(현장실습의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국고사업 운영(국고 사업별 현장실습 계획 · 정산 · 결과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 센터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현장실습 교과목 지원(방문지도, 실습교육비, 소모품비, 참여학생 보험가입비), 현장실습 사전교육 지원(사전교육, 현장실습 전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참여학생 및 참여산업체 실습교육비 지원(참여 학생 교육지원비, 실습교육비, 참여 산업체 홍보물품 지원, 산업체 방문), 현장실습 성과(우수사례 경진대회,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해 지원함
- 현장실습 운영 실적은 2022년 현장실습 표준형 10개과 78명, 자율형 3개과 29명, 필수형 6개과 1,082명이 참여하여, 총 22개 학과 1,189명이 참여하였으며, 288개 산업체가 참여함
- 지원 분야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현장실습 교과목 지원, 현장실습 사전교육 지원, 참여학생 및 참여산업체 실습교육비 지원, 현장실습 성과 지원으로 나누어짐

- * 현장실습 교과목 지원분야는 방문지도, 실습교육비, 업체협의비, 업체 홍보물품, 소모품비, 참여학생 보험가입비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되며, 총 63,763천원 지원함
- * 현장실습 사전교육 분야는 LMS를 통한 사전교육, 현장실습 전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이며 2022년에 총 1,376천원 지원함
- * 참여학생 및 참여산업체 실습교육비는 실습교육지원비, 참여산업체 현장실습 홍보물품 지원, 센터의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 전담교수비로 구분되며 2022년 159,275천원을 지원함
- * 현장실습 성과는 현장실습 경진대회,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경진대회, 기타 현장실습 관련 등으로 구분되며 2022년에 총 7,504천원을 지원함
-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관리는 학생 관리 부분과 산업체와의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산업체 관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과 지도교수가 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였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체 방문을 하여 학생 및 산업체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음
- 학과와 센터에서 학생의 안전관리 및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관리를 양방향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음

○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환류는 H(Hallym)-4STEP 현장실습 관리체계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년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과별 현장실습 운영결과 및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취합하여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성과평가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음. PPT발표, 사진공모, 캐치프라이즈 분야별 공모를 받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
- 학과 차원으로는 학과 자체평가, 참여 학생, 참여 산업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결과에 대해 평가한 후 분석하여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지원 개선 내용은 2020년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제도 변화로 인해 기존보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산업체 의견과 현장실습 업체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과들의 고충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직무교육지원비 및 실습교육지원비를 지원하여 운영

세부기준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 운영 관련 규정

- 대학은 평생교육법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선정되어 대학, 춘천시, 홍천군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 내 HiVE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은 대학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성인학습자들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평생교육 행정조직 및 인력 배치
 -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 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팀 계장 1명, 행정조교 1명 (총 3명)
- 평생교육 전문인력 현황 :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 1명(취득일자 : 2019.09.16.)
-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위한 4개 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에 관한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지자체(춘천시, 홍천군), 지역 내 거버넌스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행정조직 및 인력배치
- HiVE사업단 : 사업단장 1명, 팀장교수 3명, 계장 1명, 전담직원 6명(총 11명)

○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

- 대학은 연간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생교육원 부서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 연간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전학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선정 등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학은 총 4가지로 구분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평생교육일반과정 : 대학의 정규 학과와 연계된 평생직업 교육과정과 지역 내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전문적인 평생학습체제로 다양한 성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연간 수시 운영)
 - * 산림치유지도사 2급과정 :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 교육과정으로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교육과정(연 1회)
 - * 학점은은행제 : 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열린 학습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연간 4개 교과목)
- 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후 각 프로그램별 강의계획을 확정하고, 강의계획서에 따라 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지속가능한 강원도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성장하는 강원도형

평생학습 확산을 목표로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의 일환으로 춘천, 홍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및 지역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연간 수시 운영)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대학은 일반교육과정 프로그램(평생교육강좌) 및 학점은행제,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 후 평가체계를 준수하여 주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및 관리 운영하고 있음
- 강의평가 설문을 통하여 수강생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신규강좌 발굴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순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음
-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평생교육운영위원회에서 평가, 심의, 의결하여 차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교과목 종료시 매 회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전체 만족도, 과목별 강의평가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 및 강의개선·운영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의 학점은행제 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강의 개선·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요구/개선 사항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것으로 다음 학기에는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하였음
-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요구/개선 사항은 강의시설 및 수강생 편의 제공 향상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개선된 강의실 활용 등 후속 조치하였음
-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일반과정(17개 과정, 수료 73명), 산림치유지도사2급(1개 과정, 수료 26명), 학점은행제(4개 과정, 수료 40명)을 운영함(총 20개 프로그램 운영, 수료 139명 배출)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단에서는 자연힐링 Food & Coffee(18개 과정, 수료 194명), 실감형 미디어콘텐츠(13개 과정, 105명), IT융합전문가 인큐베이팅(9개 과정, 수료 101명), 레저전문가 인큐베이팅(2개 과정, 수료 24명), 지역현안해결과제(11개 과정, 수료 123명), 친환경마을공동체조성(6개 과정, 수료 56명)을 운영함(총 59개 프로그램 운영, 수료 603명 배출)

5.1.1 학생복지

○ 학생복지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학생복지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평생지도교수제운영규정 제5조(지도교수의 임무), 학생생활관 규정 제6조(심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5조(업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제5조(업무), 인성학습상담센터운영규정 제2조(업무), 장학금운영규정 제5조(심의사항), 교육조사만족도규정 제4조(교육만족도 조사 운영 부서),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업무), 보건실운영규정 제3조(기능) 등 학생복지 관련 규정을 갖추고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복지 지원체제 운영을 위해 교육, 복지, 취업, 시설 등의 영역에서 학생지원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처는 학생지원팀, 장애학습지원센터, 인성학습상담센터, 인권센터 등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복지를 위한 총괄 계획수립 및 지원하고 있음

○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확인

- 대학은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활용 및 차년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환류를 통해 대학정책 및 부서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은 주기적으로 소수학생 소통간담회, 학생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열린총장실, 대학생활 문의게시판, 총학생회 건의사항을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수시로 학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해당 내용은 학생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반영하고 있음
- 학생 복지 관련 주요 계획(학생만족도조사, 학생복지위원회, 소통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장학금 지급 개선, 재학생 경쟁력 강화, 간식데이 실시, 평생지도교수제 등 강화

○ 학생복지 지원 실적 확인

- 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매년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간 학생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내장학금, 학생지원비, 강의실 기계기구 구입, 통학버스 운영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혁신, 취·창업, 학생 지원, 대학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학생지원 서비스 전반에 걸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개선 사항은 다문화 소통 간담회 실시, 장학금 지급 및 개선, 재학생 경쟁력 강화(리더십트레이닝), 간식데이 행사, 학생 소통 간담회 실시, 평생지도교수제

강화, 환경개선 및 기자재 연차별 교체,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을 실시함

- 지속적인 장학금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장학금 소외자 해소를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 우애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이외에도 디딤돌장학금 2유형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음
- 장애학생 및 소수학생을 위한 보듬장학금(장애학생), 외국인장학금, 유학생성과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복지관 및 평생교육관 1~2층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음
- 학생의 학교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의실 기자재 구입,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개선, 학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및 소통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학버스 및 노선시간 변경, 학생편의시설 수리 및 관리 등을 지원하였고, 학생지원팀 주관으로 간식데이를 지원하였으며, 평생지도교수제 활성화를 위해 Lunch with Students 등을 운영함
-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불법 촬영 기기 점검, 횡단보도 및 방지턱 도색, 옥외 계단 데크 설치, 택시 승강장 환경개선, 학내 보안등(가로등)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함
-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건실을 두어 학생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 정신 건강 관리 실시를 위해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및 자기계발과 인성함양 도모를 목적으로 Self-up 프로그램을 및 수기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음
- 한빛제, 대동제 등 학생자치기구에서 주체적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기자재,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학업 수행, 학교생활 적응(간담회 실시 등), 편의시설 이용(도서관 장애인 전용석,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함
- 학생복지관 신설 운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음

○ 보건실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보건실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지원처 내에 보건실을 두어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신체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함

○ 유(有)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 확인

- 보건실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보건서비스를 지원함
- 보건실 이용자 현황을 매월 질병군별로 통계·분석하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시기별 질병 증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건실 운영 및 교육을 제공함
- 매 학년도 보건에 필요한 기본 의약품 및 마스크, 손소독제, 강의실 소독 물품 등을 구입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함

- COVID-19 팬데믹에 따른 학내 확진자 관리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질병관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결핵 등 질병 예방수칙을 수시로 안내 및 공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함

○ 장학금 지급 비율 : 충족(10.0% 이상)

- 2022년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대학정보공시 및 해당연도 결산자료 기준 16.12%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칙 제12장(학생활동) 제13장(규율과 상벌), 학생상벌에관한세칙 제2장(포상), 제3장(징계),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학생복지위원회규정 제3조(심의사항), 학생준수규정 제1장(총칙), 학생회관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림성심학보사규정 제2장(조직), 학생 단체활동 안전관리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함
- 대학은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총학생회 회칙, 학생회 선거 규정, 학생회간부승인규정, 학생단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지원함
- 학생자치기구는 총학생회, 대의원회(각 학과 학회장 포함)로 구분되며, 총학생회 회칙 제2장 제11조(임원)의거하여 총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학생활동 운영을 위해 7개의 부서로 구성함. 학생자치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3절 20조에 의거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 각부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미디어홍보센터 편집장, 각 학회장으로 하며, 학생회비 책정, 학생회 활동 사업을 검토 및 조정·심의함. 대의원회는 예산심의 및 사업승인 외에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 및 견제하는 최고 의결기구임
- 사무분장규정 제2절 제12조에 총학생회, 대의원회 및 자치기구 운영, 교내외 학생활동, 각종 학생행사 계획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학생지원업무를 계획 및 지원하며,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규정에 따라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평가함

○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 확인

- 대학은 학생지원처의 학생지원팀에서 학생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처의 처장은 학생지원처 업무를 총괄하여 학생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역할하고 있음. 학생지원처 산하 학생지원팀은 팀장(총괄), 직원 2명(한빛제, 대동제, 소통간담회 등 담당, 마음힐링 프로그램 등 담당), 행정조교 1명으로 학생지원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동아리 등록 및 운영지침 제3조 등록요건에 의하면 동아리를 취미·종교·전공동아리로 구분하여 지도교수를 두어야하며, 제4조 등록절차에 의거하여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아리 등록기간은 1년으로 지정하여, 주요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등록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학생활동은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수하여,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단체활동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행사활동보고서를 행사개시 5일 전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활동에서의 민주성 및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함
- 대학 홈페이지 열린총장실 및 학생참여광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매년 학생 자치기구 및 각 학과 대표학생들과 학생소통간담회를 운영하여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대학은 한림성심학보사를 두고 대학의 학보 발행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관 교수 1인, 간사 1인, 학생기자 7인(편집장 1인, 기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림성심학보사는 1년에 8회 대학신문을 발간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대학 언론기관으로 학생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등 학생의 시각을 통한 언론활동으로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하고 있음
- 학교 행사 및 학생활동 등을 한림성심학보사의 학생기자단이 취재 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여 학생과 대학이 소통하는 언론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활동의 대표(총학생회장, 대의원장)를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치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

○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실적 확인

- 대학은 매 학년도 부서운영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 및 평가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차년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2022년 : 장학금 지급 개선, 재학생 경쟁력 강화, 소통간담회, 간식데이 실시 등

- 학생활동을 안전하게 기획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관에 총학생회, 동아리, 방송국, 학보사 등을 배치하여, 대학은 학생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참여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학생활동지원 계획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간부 장학금과 단체복 지원, 행사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빛제(체육대회), 대동제 등 행사를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하여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인성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기구 대상 교육방송국 및 한림성심학보사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간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지원비는 교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대학은 연1회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학교 포털 시스템에 탑재하여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 도출된 건의사항은 개선 환류하여 학생활동 지원 정책에 반영하

고 있음

- 총학생회와 소통간담회 및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환류실적은 학생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생소통간담회, 총학생회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와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 개선 환류함
- * 2022년 : 남양주 통학버스 등교노선 신설 운영, 통학버스 통합관리 서비스 개선(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 등), 학기중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학생복지 인프라 환경개선공사(평생교육관 동아리실 및 방송실, 화장실), 실험실습동 앞 대주차장 신규 라인 도색 작업, 체육관 환경개선공사(지붕 누수 보수),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산학창의관, 일송체육관), 유아교육과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장애대학생을 위한 계단 논슬립 설치 및 도색 공사, 학내 석면 건축물 강의·실습실 안전 환경 조사, 학내 연구(실험, 실습)실 정밀안전진단 등 개선 환류함
- 총학생회 주요활동 지원을 위해서 2022년은 단체복 제작, 한빛제 행사지원, 대동제 행사지원, 인성캠페인, 간식데이, 간부장학금 등 지원함
- 학생지원처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 학과 대표 학생들과 솔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자치활동을 지원하며, 다문화, 장애학생 등 소수학생 간담회로 별도로 개최하고 있음
- * 2022년 : 소통간담회 1회, 소수학생 간담회 2건 개최
- 한림성심대학교 동아리 등록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학생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 중앙동아리 8개, 학과 전공 동아리 54개 운영함

○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학생단체활동안전관리지침 제5조(준수사항) 및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근거로 학생단체활동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함

○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 확인

- 학생단체활동안전관리지침 제3조(조직), 제4조(안전관리분임책임자)에 근거하여, 학생지원처장(학생지원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현장책임자(학과장, 지도교수 등)를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함
- 학생 단체 활동 시 행사 개시 5일전까지 행사활동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학생단체활동 안전관리지침 제5조(준수사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준수하도록 조치함

○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확인

- 대학은 대동제, MT, 기타 학교행사에 매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영함
- 대학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매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교직원 4시간, 학생 2시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음
- 대학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1시간을 이수하게 하고, 학생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을 동행하고 있음
- 대학은 응급처치 역량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직무능력 제고와 더불어 안전, 응급

-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행사 시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학생 단체 활동 시 행사 개시 5일전까지 행사활동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학생단체활동 안전관리지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COVID-19 확산에 따라 교육부 방역 체계와 가이드를 준수하며 학생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학생행사를 운영 및 지원함

5.1.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 확인

- 인성학습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대학생활 적응 검사 및 심리검사의 실시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 기타 학생상담 및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칙 제59조에 따라 학생의 학업·진로·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한 평생지도교수제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학생상담을 관리 운영함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 대학은 학생지원처 산하에 인성상담센터(인성학습상담센터 2021. 7월 부 개편)를 두어 학생의 학업활동, 진로설계,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갖추어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인성학습상담센터에는 센터장 및 책임교수를 두어 매년 부서별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학생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개인·집단 상담 등 체계적인 학생상담을 실시함
- 인성학습상담센터 내에 독립된 개인상담실을 두어 학생들의 상담을 원활히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을 통해 전문상담사, 지도교수와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들을 상담분야별로 기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정신건강증진 및 대학생 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위해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랑정신과의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한림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과 연계된 상담예약시스템 운용, 홈페이지 내 상담 관련 정보 제공, 상담지원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재학생 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인성학습상담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임교원 상담기법 연수를 실시하여 인성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 2022학년도 전임교원 대상 MLST-2 학습전략검사의 상담시 활용 방안과 대학자체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의 상담 시스템 정립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하였음
-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활적응검사, 진로발달검사,

성격유형(MBTI) 검사, ‘토닥토닥 마음건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각종 심리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한림성심 인성아카데미, 라이프 플러스 인성아카데미, Self-Up 프로그램을 실시함

○ 유(有) 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확인

- 대학은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위한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규정과 조직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성학습상담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 전문상담사는 상담사 자격, 심리학 석사,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생명존중지도사 1급, 인지학습심리상담사 2급 등을 갖추고 있음
- 인성학습상담센터의 센터장 및 책임교수는 학생상담에 적합한 자격을 겸비한 교원으로 조직함

○ 진로·심리 상담 및 운영실적

- 인성학습상담센터는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연간계획 및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을 구축하여 전문상담사 및 평생지도교수의 상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인성학습상담센터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전문상담사에 의해 다양한 영역의 학생 진로 및 개인·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음. 2022년은 개인상담(183건), 집단상담(92건), 온라인상담(19건)등 실시하였으며 영역별 학교/학업적응(11건), 자기이해(122건), 정서 및 행동(67건), 진로(71건), 대인관계(23건)을 시행하였음
- 평생지도교수 상담 1인당 평균지도 건수는 2022년 1학기 2.41건, 2학기 2.41건을 실시함
- 바람직한 대학인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감·리더십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한림성심 인성아카데미(2022년 1학기 93명, 2학기 123명), Life Plus 인성아카데미 프로그램(2022년 1학기 411명, 2학기 486명)을 운영하였음
- 학교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학생 인성 강화를 위한 Self-Up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기 주도적 생활 습관 및 셀프 리더십 형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기성찰 및 자발적 참여, 성과 확대를 위해 Self-Up 프로그램 수기공모전을 추진함. Self-Up 프로그램 수기공모전에 2022년 1학기 145명 중 35명이 수상하였고, 2022년 2학기 122명 중에 47명이 수상하였음
- 평생지도교수제 지도교수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생지원처 주관으로 재학생 대상 Lunch with Students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의 대학 적응 및 전공 적응을 도움. 2022학년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897명, 2학기 1,676명을 실시함
- 대학생활적응검사를 실시하여 대학적응 및 중도 탈락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생이력관리시스템(H-CAP)에 중점지도군과 관심지도군에 대해서 분야별 색깔과 기호로 표시를 분류하고 1차로 반드시 평생지도교수제와 연관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별된 고위험군에 대해선 2차로 인성학습상담센터에서 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며 인성학습상담센터의 상담 능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선 MOU 협약

기관 또는 지역별 지원시설로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음. 대학생활적응검사 2022년 1차 893명, 2차 871명을 실시하였고, 중점지도대상 80명, 관심지도대상 81명, 인성학습상담센터 상담(183건), 지도교수 상담(1차중점지도 210건, 2차 중점지도 150건)을 실시함

- 대학생활적응검사와 연계된 진로발달검사 프로그램을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 등 추후 안정적인 취·창업 단계를 통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022년 실시인원 936명, 진로미발달 85명, 잠재적 미발달 73명에 대해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탑재 지도군별 기호를 표시하여 분류하고 평생지도교수와 연계하여 학과특성에 맞는 상담 제공함
- 자기 및 타인이해를 통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성격유형검사(MBTI)를 시행하였으며, 학과별, 개인별 성격유형을 고려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지원하였음. 2022년은 888명이 참여함

○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

- 부적응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진로미발달 학생들의 경우 취창업처의 내일 라이프(MY JOB)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자기이해를 필요로 한 학생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학과와 전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학과별 진로 및 전망 Q&A 등을 통해 지원하는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중점지도군의 보다 면밀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검사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음 (TCI, MMPI-2, 지능검사 등).
-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과 대학생활에 대한 불안요소나 학업 지속 의지 수준 등 다양한 탐색작업과 인식 및 태도변화를 위한 상담적 접근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 삶의 목표와 나의 진로, 건강한 대인관계 증진, 열등감 극복을 위한 사고의 변화 등 4개 주제의 ‘토닥토닥 마음건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 인성학습상담센터는 인성함양, 학습지원, 심리상담 운영에 대해 재학생 만족도조사 설문문을 통해 평가하며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대학내 입대 대상 학생들의 군복무 기간 중 경력관리와 진로를 위해 강원지방병무청 산하 강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입대과정부터 복무기간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병역진로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진로지도, 경력개발, 학습지원을 위해 인성학습상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류 및 개선하고 있음. 대학생활적응과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대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 매뉴얼을 활용한 상담기법 연수, 1학년 기 지정교과목(인성과 소통,인성멘토링)의 Self-up 프로그램 참여 저조요인 분석과 우리 대학 핵심교양 교과목과 연계한 운영으로 학생 참여도 확대 방안 모색, Self-Up 참여율 향상을 위해 공통과목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방안 검토, 인성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일반 강의형식의 특강에서 탈피하고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예술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반영, 재학생 인지기능 검사를 위한 지능검사 도구 확보, MLST-2 학습전략검사를 지도교수 상담 시 활용하기 위한 전임교원 상담기법 주제 반영 등을 환류·개선하였음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 확인

- 학칙 제59조의 2항에 장애학생 지원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함
- 소수 집단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 학생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심의 의결함
-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장애학생 현황 : 2022학년도 3명)
- 장애학생 복지 관련 지원 계획은 2022년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도우미 지원, 장학금 지원, 간담회,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수립함
- 대학은 매 학년도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료함.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부문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2명이 참여함.
-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학교적응 및 재학생들의 문화 다양성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2022학년도에 실시함.
- 장애학생 등 소수집단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여 지원함.
- * 2022년은 생활관 장애인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을 실시함.
- * 2022년 탈북 대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탈북 대학생에게 교육지원금 지급(등록금의 50%)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인

- 전담부서인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애학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보공시 확인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6-1-10),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8-2-2)에 의거,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장애학생 지원 결과를 공시하여 충족 판정함
- 매 학년도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료하고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확인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시설 부문에서는 교내 보도와 접근로의 바닥 및 단차, 손잡이 등의 설치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해 학내 매개 · 내부 · 위생 · 기타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대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는 장애인화장실 구비, 열람실 장애학생 좌석(4석), 장애학생 도서 배달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 2022학년도 생활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시 장애인 화장실의 양변기를 교체함

세부기준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확인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를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조직 및 시설,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규정으로 제정함
-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 도서관은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과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규정 제2장에 근거하여 학술정보지원팀을 두고, 2022년 기준 도서관장, 직원, 행정 조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서관규정 제5장 5조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구입, 도서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도서관 시설 및 자산관리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매년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음
-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 확인
 -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규정 제2장 5조에 근거하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함.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음
-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서비스 강화,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도서관 환경 및 업무 혁신’ 등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실적을 작성하고,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대학은 2021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개선 계획을 수립함. 2021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으로 2022년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고 및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프로그램 울림 서평 공모전, 도서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 학술데이터베이스, 디지털잡지를 연간 구독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함. 또한 도서관의 컴퓨터 7

대, 전자철판 1대, 냉난방기 4대, 무인 도서 대출/반납 키오스크 1대를 설치하여 도서관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

○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 충족(평가기간 내 평균 21.6천 원 이상)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대학정보공시 및 해당연도 결산자료 기준 2021학년도 40,9천원임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교사확보율 : 충족(100% 이상)

- 교사확보율은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재정시스템 시설 현황 자료 확인 결과 2022년도 145.4%(보유면적 43,788.16㎡ / 기준면적 30,123㎡)

○ 관련 규정(또는 지침)

- 대학은 「시설운영관리규정」이 있으며, 제2조 3항 “관리”이라 함은 시설을 상시 이용가능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제반 행위일체를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위해 연간 법정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무처 시설 관리팀에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이 있으며, 제1조(목적)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연구실 책임자 지정 및 법정 정밀 안전진단 연간 1회 및 안전 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며 대학의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전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은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캠퍼스의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

- 교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주관으로 설비·전기·통신·연구실안전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매년 재학생 대상으로 교육 및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부서 및 학과의 실습실 조성 등 공간 변경 요청 사항 등을 공간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대학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은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전기·가스 및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음

- 대학은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기간을 나누어 시설물 안전 점검표를 토대로 각 건물별 담당자 시설물 점검을 연간 3회 실시하였으며 2022년 겨울철부터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E-dubuil)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있음
- 대학은 승강기 정기 검사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인기관을 통해 시행함
- 대학은 차세대 통합 정보 시스템(공사 협조문 관리)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상 관계철을 보관하여 기록중에 있음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 연구실(실험·실습실)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환경관리자 1인을 두고, 안전관리비 예산집행 실적 및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사고건수 등을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공시함
 - * 2022년도 연구실(실험·실습실) 4~5등급 이하 건수 : 0건
 - * 2022년도 연구실(실험·실습실) 사고 건수 : 0건
 - * 2022년도 시설안전관리 C-E등급 이하 건수 : 0건
- 대학은 연구활동중사자, 수질, 대기 오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비하고 있음
- 대학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4조 1항 시행규칙 33조 법정 의무교육 이수 후 제 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서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건축물 현황 및 6개월마다 1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석면관리대장을 작성 하게 되어 있으며 2년마다 1회 실내공기중 석면 농도측정을 하여야함

5.2.3 정보보안 지원

○ 개인정보를 위한 규정 및 준수사항

-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파일을 관리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인

-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하며, 제7조 대학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역할을 위임하였고, 제8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총무팀장과 정보전산팀장으로 지정함

-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 19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내 포털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공지함. 제 22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거해 매년 1회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관으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내 포털 사이트에 개인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게시함.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함
- 대학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학내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학, 학과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인정보 포함 글 게시를 차단하고 있음. 행정용 및 강의실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검색 및 격리, 암호화, 삭제처리 하고 있는 등 학내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정성 확인

- 대학은 학사 관련 기록의 관리, 보관 등 행정정보에 대한 안정성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은 인가자만 허용하는 등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
-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학내 PC개인정보 파일 점검, 개인정보 파일변경 및 파기신청, 개인정보방침변경 등 대학의 행정기록을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음
- 학사 관련 정보가 화재,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실 화재, 재해 발생 등 여러 비상사태를 위한 소산 백업 실시하고 있으며, 백업 장비(LTO장비)를 이용하여 도서관 건물 2층 내의 정보전산원과 분리된 본관 4층 409호에 소산하여 백업하고 있음

6.1.1 인사관리

○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은 전임교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일송학원정관 제6장 교직원 제1절(교원) 임용, 신분보장, 교원인사위원회와 제2절(교원징계위원회)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2장(직제)에서 교직원, 강사, 교직원의 임무에 대해 기준을 두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1장(총칙)에서 교원의 구분 및 직위, 임용원칙, 제3장(임용)에서 임용절차와 임용 구분, 임용기간, 임용만료, 제4장(신규임용)에서 절차와 신규임용에 필요한 내용, 제5장(승진임용)에서 승진 임용 및 트랙 전환의 절차와 기준, 제6장(재임용)에서 재임용에 대해 기준을 두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호봉승급, 포상 등을 위해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영역, 기준점수와 평가유형,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의 기준을 두고 있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에서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두고 있음
- 대학은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강사)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일송학원정관 제6장 제1절(교원), 제2절(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서 목적, 임용대상자, 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복무, 퇴직과 면직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음
- 대학은 전임교원의 교원명예퇴직규정에서 목적과 근속기간 산정, 신청자격 등의 기준을 두고 있음
- 대학의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학구성원 및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포털시스템과 대학홈페이지에 규정집을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교원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

- 대학은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시 전임교원의 총원계획수립부터 신규채용까지의 법적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채용광고→심사위원 위촉(외부위원 포함)→심사→임용후보자 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제청→이사회심의·의결→임용] 하고 있음
-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시 외부평가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전임교원 채용분야 선정→외부위원 추천 의뢰→추천자 접수 및 보고→외부위원 선정 통보→평가시행]로 선정하고 있음
-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또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 [대상자 보고 및 통보→관련 서류 취합→평가(심사) 시행→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 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제청→이사회심의의결→임용]하고 있음

- 겸임 및 초빙 교원, 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채용계획수립→채용공고→심사위원위촉→심사→임용후보자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하며, 비전임교원의 인사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을 제정하여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후 채용을 시행하였음

○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 대학은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호봉승급, 연구년(연구학기)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조(목적)~제3조(평가시기)에서는 규정의 목적 및 평가대상·시기를 정의하고 있고, 제4조(평가영역)~제8조(이의신청)에서는 평가영역, 점수, 업적평가위원회, 평가절차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의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심사와 관련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조(목적)~제7조(심사자료)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운영, 기능,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등을 준수하여 매년 말 개인별 교원업적평가를 시행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결과 값을 활용하여 재임용, 승진임용, 호봉승급, 연구년(연구학기) 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은 교원업적평가 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기준점수와 평가유형)에 따라 표준형의 경우 학생·취업지도 항목에 최대 10점, 산학교육·가족회사발굴 및 교류·산업체 연수 등 산학 활동실적에 최대 30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산학협력중심형의 경우 산학활동실적을 최대 50점 까지 반영하고 있음

○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확인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은 2022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 보직 교원 4명,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1명, 자연과학 4명, 공학 3명, 예체능 1명으로 안배되어 있고, 3명의 여성교원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성별 안배도 고려되어 있음
- 대학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인사위원회 간 중복비율과 위원장 겸직 제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
- * 2022학년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전원 정교수로 위촉하였으며, 위원 6명 중 보직교원 2명, 계열은 인문사회 2명, 자연과학 2명, 예체능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교원 3명 위촉되어 성별 안배도 고려되어 있음

○ 전임교원 확보율 : 충족(50.0% 이상)

- 2022년 4월 1일 기준 전임 교원 확보율은 학생 수 기준 (61.36%), 편제정원 기준 66.94%로 많은 수(재학생)기준으로 61.36%임

○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 직원의 채용과 승진 등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인사규정, 일반계약직임용규정,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취업규칙 등이 있음

- 직원인사규정에는 직원 신규 채용, 승진 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일반계약직임용규정에는 일반계약직원의 임용·보수·연봉제 정규직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성과급지급규정에는 교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대학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사무분장 규정이 있으며, 부서내의 세부 업무분장은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구체적인 업무가 제시되어 있음
- 우리 대학의 직원 채용은 직원인사규정 및 일반계약직임용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2020년부터 대학은 일반계약직임용규정을 제정하여 신규채용 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해 ‘연봉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 체제를 마련함
- 직원 채용 절차는 인사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인원 및 자격조건 등을 확정 후 공고함
- 직원 채용은 본교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채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임용 후 1년 일반계약직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연봉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과 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정규직으로 발령함
- 직원의 승진은 직원인사규정 제4장 승진 및 승호에 근거하여 년 1회 승진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은 직원인사규정 제8장 근무성적 평정에 근거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직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정의 결과는 승진, 성과급 등에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직원 근무성적 평정 절차는 인사부서에서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함

○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 확인

- 직원 인사에 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직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2022년 직원인사위원회는 총 5회 실시했으며 ‘모범직원 포상(안) 심의’, ‘일반 계약직원의 연봉제 정규직 전환(안) 심의 3건’, ‘2022년 직원 근무성적 평정계획(안)’ 안건에 대해 심의함
- 직원 인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사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직원채용, 승진, 인사평가, 포상, 해임과 관련된 직원인사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6.1.2 역량 계발

○ 교원 역량계발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교원의 역량 계발과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해외연수·여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원인사규정 제34조의3(연구년의 기간)~제34조의11(세부사항)을 통하여 교원연구년(연구학기) 기간,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선정, 신분 및 처우, 의무사항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교직원해외연수·여행규정 제1조(목적)~제10조(세부사항)을 통하여 교원의 역량계발을 위한 해외연수·공무여행에 대한 적용, 연수 기간, 신청 및 허가 절차, 관련 의무 등을 정의하고 있음

○ 교원 역량계발 지원 실적 확인

- 교원인사규정 제32조(복무)에서 교원은 대학교의 봉직자로서 교육·학생지도 등에 전력을 다하여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교육 및 학생지도 등 역량계발을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원의 직무능력 및 역량강화 교육·연수 참여를 지원하며, 교원 역량계발 지원 실적은 2022학년도 교원 65명이 124개 과정(55,929천원 지원)에 참여함

○ 교원 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

- 당해 학년도 연수 지원계획 수립 시 전 학년도 시행 사업의 정성·정량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평과 결과 및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반영하고 있음

○ 장기 역량계발 지원 : 충족(16주 이상)

-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해 16주 이상의 연구년(연구학기) 및 6개월 장기 해외연수에 대한 기간, 신청 및 허가 절차,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교원인사규정 제34조의3(연구년의 기간) 제34조의11(세부사항) 및 교직원해외연수·여행규정 제1조(목적)~제10조(세부사항)을 두고 있음
-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해 매년 연구년(연구학기) 교원을 선발하여 6개월(반년) 연구년제를 시행함
- 2022학년도 연구년 대상자 없음. 2023학년도에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함(2명 중 1명은 차년도로 연기 신청)

○ 직원 직무역량계발 관련 규정 확인

-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계발을 위해 직원인사규정 제9장 교육훈련에 근거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직무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육훈련의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지원 실적 확인

- 대학은 전체직원 교육, 신입직원교육, 외부교육(외부기관 위탁교육, 유관기관 교육, 벤치마킹) 등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및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전체직원 교육은 부서별 주요 현안 발표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정례회의 시 운영하고 있음
- 외부교육은 업무 담당자가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 참가가 가능하며, 직무별 협의회는 부서 자체적으로 참가자를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음. 2022학년도 연말정산 관련 교육 과정 등 업무관련 연수 및 교육 총 81명에게 8,694천원을 지원하였음
- 신입직원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직원 교육 시 파트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숙지 교육(정관, 학칙, 제규정 숙지) 및 예산시스템 사용 교육(정책기획팀), 개인정보보호 교육(총무팀), 기본소양 및 CS 교육(교무지원팀), 기타 문서 작성법 및 교직원 복리후생 제도 안내 등 대학생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은 총무팀에서 담당하여 교육함
- 2022학년도 대학혁신을 위한 교직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전체 직원 및 조교를 대상으로 교육함

○ 직무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확인

- 직원의 교육훈련 요구분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함

6.1.3 연구

○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

- 대학은 교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하고자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제1조(목적)~제18조(세부사항),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지침,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연구비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8조(세칙), 직무발명규정 제1조(목적)~제26조(세부사항) 등의 규정과 지침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 활동 지원 실적

- 교원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비로 2022년 5명 4,658천원을 지원하였음
- 대학의 발전 연구,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정책연구비로 2022년 8개 연구 과제 25,106천원을 지원하였음

○ 연구 활동 성과 평가 및 활용

- 교원의 학술연구비 지원 결과로 산출된 결과물의 등재 여부를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 성과의 적절성 여부 및 성과를 평가함

- 교원의 정책연구비 지원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외부 평가·사업 선정 등)으로 해당 연구의 등급을 평가하며, 연구 등급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차등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정책연구활동을 독려함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 충족(0.2건 이상)

- 교원의 연구실적은 대학정보공시 확인결과 충족 기준(0.2건 이상)을 상회함

세부기준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 충족(30.0% 이상)

-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 해당연도 결산서 및 교원 연봉 확인 결과
* 2021회계연도 : 45.6%(교원인건비 7,102,094천원 / 등록금수입 15,553,192천원)

○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 충족(11.0% 이상)

-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 해당연도 결산서 및 직원 연봉 확인 결과
* 2021회계연도 : 19.1%(직원인건비 2,970,283천원 / 등록금수입 15,553,192천원)

○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 확인

- 대학의 교원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단규정(진료비 감면 규정), 경조비 지급 규정, 자녀장학금 지급규정 등이 있음
-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송학원 진료비 감면 규정(427-1)이 있으며, 재단의 6개 병원을 통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교직원 본인 비급여 50%, 교직원 가족 비급여 30% 감면 등) 지원함
- 교직원 경조사 또는 재해발생시 경조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조금지급규정이 있으며 규정 내 경조비 지급 기준표에 근거하여 2022년도 5,960천원을 지원함
- 교직원 자녀장학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분기별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생 1,500천원 이내·대학생 1,800천원 이내 지원, 본교 재학생은 실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66,557천원을 지원함

○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 확인

-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재단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동해안 휴양소(강원도 강릉 소재) 및 서해안 휴양소를(충청북도 태안 소재) 운영하고 있음
* 총무팀에서는 전체 부서 및 학과, 한림유치원 대상으로 휴양소 신청 안내 공문을 작성하여 회람 한 후, 신청서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발송 함
* 재단본부 인사팀에서는 휴양소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여 당첨자 개인에게 별도로 안내함

-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림성심대학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노사협의회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노사협의회규정 제5조(구성)에 따라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위원 각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규정 제14조(회의의 개최)에 따라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개최하여 연 4회씩 운영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전, 근로자측 간사는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을 접수 받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함. 상정한 안건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며 사용자측은 근로자 측의 요구를 대학실정에 맞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음
 - * 2022년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은 급여 및 기타수당 인상에 관한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도 직원 직급수당 인상으로 개선하였음
- 뛰어난 업무 성과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모범 직원(부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2022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범(공로) 교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함
- 대학은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하계 방학기간(8월 첫째 주) 집중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집중 휴무기간을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의 경조사 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V. 자체평가 결과활용 계획

1.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 결과는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
- 대학발전계획 및 정책수립에 활용
- 예산편성시 선택과 집중에 활용
- 대학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에 활용
- 사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평가 결과 활용

2. 평가결과 활용방안

